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역할 및 임무

자율준수 관리자

역할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회사경영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역할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BG자율준수관리책임자에게 위반사항 개선요구
- CP운영에 대한 임직원 교육
- 공정거래위원회 협조 및 지원
- 자율준수상별위원회 운영
-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 CP운영에 대해 이사회 보고

BG 자율준수 책임자

역할

-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BG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확산, 정착되도록 한다.

역할

- BG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 시정요구에 대해 개선사항 이행
- 공정거래법 교육지원
- 전사 CP운영 지원 및 BG창구 역할

자율준수 실무팀

역할

-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권한과 책임에 충실하도록 실무를 지원하여 공정거래법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문화로 정착되도록 한다

역할

- CP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 시정사항 개선요청 및 사후관리
- CP교육 및 운영지원
- 공정거래법 관련 신고센터 운영
- 공정거래 관련 대외창구 역할 수행
-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9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10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1
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11
2) 핵심 7대 요소의 이행	11
II. 회사 주요업무별 유의사항	15
1. 당사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16
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사항	16
2) 부품제조사 문제시 되기 쉬운 행동유형	17
2. BIZ파트너(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22
1) 경쟁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	22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2
3)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	24
4)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	25
5) 거래강제 행위	27
6) 유의사항	28
7) 위반시 제재	30
8) Q&A	30
3. 경쟁사관련 불공정거래행위	32
1) 경쟁사 배제·사업활동방해	32
2) 경쟁사와 부당한 합의(부당 공동행위)	34
4. 계열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42
1) 부당지원 1 - 무상 또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	42
2) 부당지원 2 - 물량몰아주기	46
3) 계열사 차별취급	47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금지	49
5) 사례	49
6) 유의사항	53
7) 위반시 제재	57
8) Q&A	57
9)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62
10)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Q&A	73
5. 하도급관련 유의사항	85
1) 하도급거래란?	85

2) 법적용대상	89
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 상의 규제내용	90
4) 발주자의 의무사항	114
5) 위반시 제재	117
6) 업무시 유의 사항	122
7) 하도급거래 단계별 확인사항	123
8) Q&A	127
6. 프로모션 관련 유의사항	139
1) 표시, 광고의 의미	139
2) 약관사용시 유의사항	143
III. 행동지침	153
1. 입찰 관련 유의사항	154
1)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154
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155
3) 수주 수량 등에 대한 행위	156
4)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156
2. 경쟁사 모임 관련 행동지침	157
3.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158
4.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159
IV. 체크리스트	161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62
1) 공정거래법 유의 및 금지사항	162
2)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63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	165
1)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165
2) 하도급 법 주요 의무·금지 사항	167
3)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169
V.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질의 Process	173
VI.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절차	177
V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183
VIII. 4대 가이드라인	19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DOOSAN

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함
- 「자율준수 편람」 또는 「자율준수 매뉴얼」이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 편람을 말함

2)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란 「두산에너빌리티(주)」를 말함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함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함
- 「거래업체(거래 상대방)」이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사, 공급업체를 말함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함
- 「고객」또는 「실수요자」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를 말함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함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1)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약관규제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

2) 핵심7대요소의 이행

(1) 최고경영자의 의지 표명

- 최고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선언
- 최고경영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범위 밖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

(2)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임
-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3)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에 따라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신규 제정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율준수 편람을 개정

(4) 교육 시스템

- 자율준수 관리자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범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공정위 및 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
- 자율준수 관리자는 최고경영자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 자율준수 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년간 유지

(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 자율준수 관리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집행

(6)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 자율준수 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최고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함
- 자율준수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함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를 구축 하여야 하고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문서관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6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회사 주요업무별 유의사항

1. 당사와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2. BIZ파트너(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3. 경쟁사관련 불공정거래행위
4. 계열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5. 하도급관련 유의사항
6. 프로모션 관련 유의사항

DOOSAN

II 회사 주요업무별 유의사항

1. 당사와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하도급법은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의 의무로 서면교부 등의 9가지 의무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금지 등의 13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행위와 금지행위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 됨
- “우월적 지위남용”이란 ①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②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됨

(1) 어떤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가?

- 우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우월적 지위)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임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 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가?

- “남용행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 하도급법은 “일반적인 하도급 대금의 인하”(부당감액)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이것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쉬움

2) 부품제조시 문제시 되기 쉬운 행위유형이 있음.

- ① 배송비용의 부담, ②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③ 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④ 거래조건의 변경, ⑤ 견적시의 조건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⑥ 수령거부·검수지연, ⑦ 유상지급 원재료의 조기결제, ⑧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등임

(1) 배송비용의 부담

- 위탁사업자가 just in time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라 종전에 일회 납입되었던 제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납품시키기 때문에 수탁사업자의 제품 운송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종전과 같은 하도급 대금으로 납품시키는 때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분할 납품시의 운임부담에 대하여도 비용 산정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위탁대금에 포함된 운송경비에 대하여 1회의 운송량과 운반형태 등의 조건을 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경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운송요율을 결정할 때에는 견적의 전제조건으로서 발착지, 납입빈도(회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견적을 받고, 이 내용을 정밀 조사한 후 합의한 상태에서 요율을 결정

(2) 원재료 가격 등의 가격전가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를 위탁사업자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종전의 가격으로 납입을 요구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때문에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계산 등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원재료 등의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경비동향 등을 파악, 명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 충분한 협의를 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3)일방적 원가 저감율(低減率)의 제시

- 위탁사업자가 자사의 예산단가,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위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단가, 가격으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의 예산단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일방적 하도급 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발주 후에 원사업자가 예산단가, 가격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상의 부당감액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 됨

◦ 행동지침

- 제품의 단가, 위탁대금에 대해 품질과 반품의 대응조건을 가미하면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위탁사업자에 있어서는 사내의 기술담당 및 조달담당의 긴밀한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제품가격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가 예정 사양과 실제 발주량을 반영한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내의 예산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

(4)거래조건의 변경

- 위탁사업자가 일정수량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제품단가의 견적을 받고, 실제로는 견적시보다 적은 발주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견적시의 단가를 발주 시키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견적시의 예정단가(이 단가는 소량생산을 하는 경우의 통상의 대가를 대폭 하회하는 것임)에 근거,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고 실제로는 견적시 보다도 적은 양을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의 일방적 하도급 대금 인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실제 발주시에 생산량의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실제의 생산량에 근거한 비용계산 등으로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발주시에 결정한 수량을 하회한 납품수량으로 발주를 중단한 경우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혹은 감액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 동시에 발주가 중단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발주로 정한 하도급 대금을 하회하는 대금정도로 지불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대금감액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우려가 있음

(5) 견적시의 조건변화에 의한 가격의 재검토

- 견적에 있어서 납입 예상수가 발주시에 대폭 감소하는 등 제품단가가 변동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충분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품단가를 재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수령거부, 검수지연

① 수령거부

- 어느 제품의 발주를 받아 위탁사업자에게 납입하도록 한 경우,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탁사업자가 납입거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가 수탁사업자(수급사업자)에 대해 위탁한 급부의 목적물에 대해 지정된 납기에 수급사업자가 납입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하도급법 상의 수령거부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제품의 납입일에 대해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가 일정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여 확실하게 납입할 수 있는 일을 서면으로 정하여, 원사업자가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검과 병행하여 일정을 관리하게 되어 생산관리의 효율 화에도 기여

② 검수지연(지불지연)

- 프레스 등에 필요한 금형, 목형, 기타의 형(이하 “형”이라고 함)을 검수할 때에는 기술적으로 판단이 곤란하며 여러 번 다시 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기술적 관점에서 금형 시험 중인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실제에는 이미 금형을 사용한 제품제조를 행할 수도 있음. 이 때, 수검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위탁사업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가 필요함
- 또한 수검의 결과, 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원사업자)는 수검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형을 수령한 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지불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점에 유의가 필요
- 또한 원사업자가 필요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급부수령 이전에 발주변경(설계변경 등)을 한 경우에도 동일함

◦ 행동지침

- 기술적으로 곤란한 성과물의 수검을 진행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우선 발주사의 사양과 수검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명확히 정해 이 기간 내에 수검을 종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유상사급자재의 조기결제

-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로부터 가공대상물을 유상으로 지급하고 이것을 가공하여 위탁사업자에게 납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유상사급자재를 실제의 가공시기보다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공대상물을 납입한 후의 대금수령보다도 유상사급자재의 대금을 조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유의점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지급한 유상사급자재의 대금을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하도급 대금보다 조기에 지불시키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행동지침
 - 유상사급자재의 결제에 대하여는 가공 후의 제품의 납입대금에서 이 가공대상물의 대금을 공제하여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 때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에게 당월 납입한 것 중에 포함된 유상사급자재를 개별로 골라내어 이 금액을 합계하여 당월 납입대금의 지불시에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 외에, 경리업무 작업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대금으로부터 공제할 시기를 1개월 지연시키는 방법 등도 있을 수 있음

(8) 금형도면 및 기술·노하우 등의 유출

-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상품·금형의 제조위탁을 행한 때에는 발주서면 상의 급부의 내용에 금형도면과 제조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형의 납입과 함께 당해 도면을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금지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 유의점
 - 도면과 노하우를 제공시키려는 경우에는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하거나 또는 사전에 정한 발주내용에 금형도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백하게 하여 당해 도면을 포함한 대가를 수탁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한 상태에서 설정할 것이 필요함
- 행동지침
 - 도면의 이전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가능한 한 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BIZ파트너(협력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1) 경쟁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5호)

(1) 개요

- BIZ파트너에 대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할 경우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거래 상대방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
- 왜 금지하나요?
 - BIZ파트너와 거래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 시킴으로써 자신의 독점력을 강화, 유지할 수 있으며, BIZ파트너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3) Must Not do These

-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시 자기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
- 자기가 구입하는 강판 등을 경쟁사에게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2)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4호)

(1) 개요

- BIZ파트너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외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BIZ파트너들과의 거래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함. 거래조건에는 각종 구속사항, 저가 또는 고가매입,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됨. 이러한 행위들은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부품 등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품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 증가분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음
- 왜 금지하나요?
 - 거래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결과적으로 거래 상대방은 그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경쟁조건이 불리하게 되며, 반대로 행위자가 이익을 받게 된다면 경쟁 여건 면에서 그의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결국 자유경쟁의 기반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한 경우
 -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규정하면서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지급은 면제하도록 한 조항
 -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서 상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한 조항

- 재판관할 법원을 일률적으로 자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
-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납품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 계약서 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는 행위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간접비를 시공업체의 청구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지연,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기간 등을 납품기간에 포함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긴급공사에 대하여 선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은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납품지시후 생산이 완료된 물량을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이를 취소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제재를 위한 목적의 공급물량감축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1) 개요

- 특정 BIZ파트너에게 부당하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를 정지한다거나 거래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왜 금지하나요?
 -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할 목적으로 경쟁사

업자 제품을 취급하는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아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지속적으로 거래하던 납품업체가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특별한 이유없이 당해 업체로부터의 구매를 중단하는 행위
- 납품업체의 귀책사유나 제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납품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토록 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거래할 목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기존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 납품업체가 경쟁 사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계열사라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 또는 중단하는 행위
- 제품구매 또는 시공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여 지명 또는 제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특정사업자를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거래중단에 따르는 명확한 사유(품질, 납기 지연, 부정 연루 등)가 있어야 함. 부정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이를 반영해 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명확한 증빙을 추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협력사들이 당사와의 거래중단에 따른 대체 납품처를 찾을 수 있도록 통상 3개월의 여유(거래연장)를 주는 것이 판례입장
- 거래중단이 예상되는 업체는 6개월 전에 거래중단을 알리는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고, 거래중단 예정 3개월 전에 정식으로 거래중단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 거래중단에 따른 업체의 피해 및 항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협력사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4)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는 행위(법 제23조제1항제1호)

(1) 개요

- 특정 BIZ파트너에게 부당하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BIZ파트너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하게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이행방법이나 대금의 결제조건 차별 등)
- 거래조건에는 수량, 품질, 규격, 인도조건, 대금지급조건, 수송조건 등이 포함됨
 - 거래지역 차별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가격은 현저하게 내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음으로써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의 경쟁사업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음
- 왜 금지하나요?
 - 다른 제조업자 제품의 취급제한 등 공정거래법 상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유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고 불리한 차별을 당하는 사업자는 경쟁상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경쟁사업자에 대한 제품공급비중에 따라 어음지급기간 등 대금결제비중을 달리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가격차별을 하는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높을 수록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격차별이 현저해야 함
- 전직 직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거래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경쟁업체의 것과 비교해 보아야 함
-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5) 거래강제행위(법 제23조제1항제3호)

(1) 개요

- 협력사 등 BIZ파트너에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항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거래강제 행위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 왜 금지하나요?
 - 공정한 경쟁이란 사업자간에 저렴한 가격/품질/서비스를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협력사 등 BIZ파트너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거래를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수단의 공정성 측면에서 부당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음

(3) Must Not do These

-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사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협력사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사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4) 업무상 유의사항

-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단순한 요청이 거래상 지위와 결부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강

제 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여 반드시 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6) 유의사항

(1) 1차 및 2차 협력사 관련 유의사항

- ① 1차 및 2차 협력사 간 계약에 대해 당사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함(경영권침해)
 - 1차 및 2차 협력사 간 납품 대금의 결정 및 원자재 업체의 지정 문제는 해당 협력사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판정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 당사가 필연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명기(제3자 참석한 회의록)해서 증거로 남겨야 함 단, 당사가 고객의 품질 요구수준 및 Buyer의 요구 등과 같은 명확한 이유에 의해 행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 역시 과도할 경우 문제될 수 있음 (원재료 구입처의 지정, 2차 협력사의 지정 및 기계 설비의 지정 등)
- ② 2차 협력사에 대한 품질 및 경영지도를 할 경우
 - 당사가 2차 협력사의 불량 및 기타의 문제로 인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차 협력사의 문제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혹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 (ex. 3개월치 불량율 Data, 입고지연 Data 등)
 - 당사, 1차, 2차 협력사 간 회의를 통해 당사가 2차 협력사를 직접 지도한다는 회의록 및 합의서
 - 3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작성되는 회의록 및 합의서에는 당사가 2차 협력사에 나가서 행동할 내용, 즉 지도 범위, 지도 기간, 지도 대상품목 혹은 기술, 2차 협력사의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행동범위 및 일반 총무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함

(2) 협력사와 거래중단시 유의사항

- 거래중단에 따르는 명확한 사유(품질, 납기지연, 부정 연루 등)가 있어야 함
- 부정의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이를 반영해 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명확한

증빙을 추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협력사들이 당사와의 거래중단에 따른 대체 납품선을 찾을 수 있도록 혹은 협력사가 가지고 있던 재고의 소진을 위해 통상 3개월의 여유(거래연장)를 주는 것이 판례(제조 라인)이 없는 경우는 통상 1개월 정도)
- 거래중단이 예상되는 협력사는 6개월 전에 거래중단을 알리는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고, 거래중단 예정 3개월 전에 정식으로 거래중단을 알리는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거래중단에 따른 협력사의 피해 및 항변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협력사에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3)거래거절시 주의사항

- 거래처 또는 물품구입처와의 사이에서 거래조건이 타협되지 않고 거래의 신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다음 점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함
 -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이유를 정확히 전하고
 - 거래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보존해 둬
-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여서는 아니 됨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을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예시
 - 중개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
 - 배타조건부 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연계된 경우
 -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자기 제품을 전속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기 제품의 공급을 제한 또는 거절하는 경우
 -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밀어내기 등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용이하게 다른 거래처를 구할만한 충분한 최고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거래를 거절하여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체크포인트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비계열회사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협력사 영업활동 제한 또는 거래 상대방 제한 등)
 - 특정사업자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 계열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의 구매시에는 항상 계열회사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거래처 선정시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거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7)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법위반 관련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이내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8) Q&A

[부당한 거래 거절]

 거래거절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 협력사 등과의 거래시 계약기간 종료후 거래를 연장

하지 않는다면 범위반에 해당하는가?

: 협력사 등과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행위는 당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행위가 협력사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당사자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고 있는 물품공급업체(Vendor)의 불성실한 공급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예기간 없는 해지가 가능한지? (계약서에는 최고후 해지규정을 두고 있음) 그리고 만일 고객사의 요청으로 거래중인 물품 공급업체(Vendor)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해지시 필요한 사유? (계약서 상 필요한 내용)

: 공정거래법 상 유력한 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거절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큼니다.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는 한 충분한 사전 최고후 거래거절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사전최고기간은 당해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거래 상대방이 거래선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질문에서 거래 상대방의 불성실한 공급은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도 사전최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최고 후 계약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요청으로 거래거절한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상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사유 별로 필요한 사전최고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대방에 예측가능성을 주고 사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Q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가?

: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최고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Q 설비 초기 검토단계에서 A사와 기술검토 및 협의를 하였으나, 회사의 완료 일정 준수 등 기

타사정상 B사를 설비공급업체로 선정할 경우 A사의 이익제기시 A사에 기술검토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동 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상 문제라기 보다는 사전 계약의 문제로서, 기술 검토비 지급문제는 설비기술 검토를 시작하기 전 양사의 계약조건에 따르되 원칙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공정거래법 상 업체와 거래중단시 몇 개월 전에 업체에 통보해야 하는가?(사전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상당한 유예기간으로만 규정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사전 통보해 주어야 한다면, 업체 규모나 기준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 공정거래법 상 거래거절시 사전최고기간에 대해 달리 정한 바는 없고, 거래형태·거래 특성, 거래관행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 통상 거래 상대방이 거래선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최고는 거래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래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유를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열거하고 각각의 사유 별로 사전최고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한다든지 우리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유만을 나열한다면 또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당사와 수년간 거래해 오던 납품업체가 계약기간 중 특별한 과오는 없었으나, 계약만료 후 거래선 변경 필요에 따라 해지한 경우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는가?

: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납품업체의 경우 수년간 거래해 온 만큼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업체의 신뢰보호를 위해 계약만료 전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이 없다는 뜻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경쟁사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경쟁사 배제·사업활동방해(법 제23조제1항제2호)

(1) 개요

-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부당고가매입)”에 해당될 수 있음
- ◎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관련법령 내용

◎ 경쟁자배제, 사업활동방해

-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통상 거래가격보다 높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됨
- 사업활동방해행위
 -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왜 금지하나요?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상품, 원재료 등을 독점하기 위하여 통상 거래가격에 비해 고가로 매입, 독차지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정상적인 사업영위를 저지,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키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계열회사의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

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열회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

- 특정 지역에서만 고가격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당해 지역의 경쟁자의 원재료구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방법에 의해 거래처·하도급 협력사의 기술을 입수 또는 도용하여 자기가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다른 수요업체에게 판매함으로써 기술을 도용 당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이 방해되는 경우
-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기술인력에게 그 회사의 중요 기술이나 제조비법이 담긴 서류나 설계도를 갖고 온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자기가 직접 생산·판매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
- 자기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거래처로 옮기려는 업체에 대하여 담보해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근거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거래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

(4)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범위반 관련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이내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 경쟁사와의 부당한 합의(부당 공동행위)(법 제19조)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1) 관련법령 내용

- ◎ 경쟁사와의 부당한 합의

-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경쟁압력을 받고 있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장행위를 경쟁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시장행위를 의식적인 합의를 통하여 상호조정하려고 하는 데에 위법성의 본질이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로 표현되는 의식적인 요소의 존재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행 행위가 없더라도 규제대상이 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음

◎ 왜 금지하나요?

-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등 자유로운 경쟁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공동행위를 통해 산출량의 제한과 가격의 결정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내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되기 때문임

◎ 합의란 무엇인가요?

-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말하지만, 반드시 청약·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가 일치하였다는 상호 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적 양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 다만 의사의 연락(communication)이나 접촉(contact)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 내지는 공통의 인식(consensus)에 이르러야 함
- 합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진 방식이나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에 따라 입증되는 합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 다만 합의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상호 인식하는 가운데 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시장행위가 동조화되는 경우인 이른바 의식적 병행 행위나 동조적 행위는 반드시 합의의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존재한다는 증거만으로는 합의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구분	증거	
의사연락증거 내지 접촉증거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가 형성될 기회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당사자 간 의사연락 또는 접촉 사실과 관련된 증거	
경제적 증거	시장행위 (담합조장 행위 포함)	합의의 존재를 나타내는 시장행위(특히, 단독으로 행할 경우에는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동으로 행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와 관련된 증거 담합조장행위· 합의의 형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행위(주기적인 정보교환, 가격변동 신호전달 등)
	시장구조	합의의 형성이 용이한 시장구조와 관련된 증거
	시장성과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증거

(2) Must Not do These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 공동으로 가격의 인상·인하(폭)를 결정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과당경쟁방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 거래조건의 결정행위
 - 대금지급방법을 제한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행위
 - 상품 인도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거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되지 않는데도 상품 등의 인도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량의 제한행위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수송량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

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생산량, 필요재고량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 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거래 상대방 제한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 사업자와고만 거래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의 방해·제한행위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종류·규격의 제한행위
 - 공동행위 참가사업자별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상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상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신제품의 거래승인거부, 거래시기제한 등 새로운 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 공동관리회사 설립행위
 -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기의 상품만을 전담하여 판매하는 판매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타사업자 사업활동 방해·제한행위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입찰담합
 -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절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 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0.6.9.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원1983.1.18.선고81도824)
 -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15849, 1999.2.23.선고)
 - 입찰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3) 위반시 제재

- ①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 ② 과징금

- 법위반 관련 매출액(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법위반 관련 매출액 : 위반행위기간 중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처에 법위반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제재)
- 2007.11.4 이후까지 계속 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한 10% 적용

③ 합의 등의 무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적 인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간 이를 무효로 함

④ 손해배상책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⑤ 형사적 제재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

(4) 리니언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법 22조의 2)

① 개요

-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는 법 21조의 시정조치, 법 22조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의 고발도 면제될 수 있음.

② 자진신고자 기준 및 자격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면제됨.

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여야 함.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하였어야 함.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어야 함.

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가 면제 혹은 감경됨.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어야 함.

나. 첫 번째 기준의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에 협조한 자로서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50%를 감경하고 시정조치가 감경됨.

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여야 함.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나. 첫 번째 기준의 다목, 라목에 해당해야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자신이 관련된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가 감경될 수 있음.

③ 예외

- 자진신고자로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이 되지 않음.
-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 하나가 신고를 한 사업자, 그리고 최초 자진신고가 있는 후 2년이 지나 자진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의 감경이 되지 않음.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그리고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심리하거나 분리의결 할 수 있음.

(5)FAQ(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Q 2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공동행위가 추정되는 경우(19조 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사업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사업자가 반증해야 하는가?

A : 일반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는 더욱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어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를 적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외형상 행위가 일치하고 일정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 합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등이 그러한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의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바, 최근

법원에서는 ①동일·유사한 가격책정행위가 해당사업자 각자의 독자적 경영판단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우, ②해당사업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련된 외부적 요인이 각자의 경영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득이하게 동일·유사한 시기에 동일·유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③가격 선도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결정을 하고 후발업체가 일반적으로 선도업체의 가격을 단순히 모방한 경우 등에는 합의추정의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법 2000.6.20, 98누10839)

Q 8가지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모두 합의사실만 확인되면 범위반으로 보는가?

: 현행 법상 8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범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위 경성 카르텔(독점력의 형성, 강화,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고정, 수량제한, 시장분할, 고객 배분, 입찰조작 등의 적나라한 담합행위)에 해당하는 가격이나 수량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등의 경우 공동행위 참가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높지 않더라도 경쟁제한성이 명백하므로 원칙적으로 범위반으로 본다. 반면 설비의 신·증설이나 상품의 규격제한, 공동관리회사 설립 등에 대해서는 동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충분히 감안하여 범위반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Q 입찰금액 등을 거짓으로 합의한 것도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가?

: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른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신뢰하고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위와 같이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진의아닌 의사표시라 하여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계열사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1) 부당지원1 - 무상 또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

(1) 개요

- ◎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비계열회사에게 가지금급, 대여금, 부동산, 기업어음, 주식, 인력 등을 아주 높은 가격이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이들을 지원해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 부당지원행위(무상 또는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우량한 회사(지원주체)가 부도직전에 있는 계열사(지원객체)에게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저리의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계열증권사(지원객체)에 주식투자의 의도가 없이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치하는 경우 혹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시장금리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지원주체)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할인율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낮은 할인율로(즉,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혹은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사업자(지원주체)가 계열사(지원객체)의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계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 왜 금지하나요?

-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경우 당해 회사의 핵심역량이 유출되어 경쟁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지원을 받은 객체는 부당하게 경쟁상 지위가 제고되어 당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수 있으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 제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금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 등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행위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수수료, 자산 매각 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 합병교부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대해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행위
- 은행에 외환을 저가로 매각하여 계열회사로 하여금 동 은행으로부터 외환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공동 광고주로 표시한 광고의 광고비를 전액 지급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행위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
- 금융회사의 특정증권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로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계열사,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회회 인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보유한 타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로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상속세법에서 정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거래하는 행위(상속세법에 의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포함)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은 높고 이자율은 현저히 낮게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들이 인수하는 행위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는 행위
- 공장/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행위(매매 행위 포함)
-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 공장/사무실 등을 임대한 후 임대 보증금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행위
- 공장/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임차 보증금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선지급하는 행위
- 임차한 건물의 유지 관리비를 과다 지급하는 행위
-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보유한 채권(외상매출채권 등)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행위
- 회사채 재인수를 통하여 계열 증권회사에게 회사채 증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수익증권 판매 보수를 과다 지급하여 계열증권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영업 양수도, 자산 매각, 거래조건 등의 차별을 통한 지원행위 등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행위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

(4)업무상 유의사항

- 계열사 간의 자금대어는 정상금리로 이루어 져야 함
-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는 부당한 자산지원행위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설립당시부터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부당지원2 - 물량몰아주기(법 제23조제1항제7호)

(1) 개요

- ◎ 계열사에게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관련법령 내용

- ◎ 부당지원행위(물량 몰아주기)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발표)
- 상당한 규모의 거래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의 입장)
-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
-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 ◎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 왜 금지하나요?
 - 계열사에 물량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3) 계열사 차별취급(법 제23조제1항제7호)

(1) 개요

-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계열사 차별취급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2) 관련법령 내용

◎ 계열사 차별취급

-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계열회사와 다른 거래 상대방을 상당히 차별하는 행위임. 흔히 상품·용역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일컬음. 제7호의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 억제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가리지 않는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계열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의 판단기준으로서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임

◎ 왜 금지하나요?

-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의 경우에는 자기 계열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거나 경쟁력이 낮은 계열회사가 퇴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임

(3) Must Not do These

- ◎ 제품의 품질이나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의 합리적 차이가 없음에도 비계열회사보다 계열 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
- ◎ 자기 계열사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
- ◎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게는 비계열회사보다 어음기간을 짧게 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금지(법 제23조의 2)

(1) 개요

- ◎ 자산규모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총수 등 그 특수관계인이나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 30%(상장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2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아래의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2) 금지행위

-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 사업능력, 재무상태, 품질, 가격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3) 예외

- ◎ 회사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허용함.

5) 사례

(1) 부당한 자금지원

- ◎ 사례
 - OOOO(주)는 계열회사인 XXXX(주)로부터 자동차 샤시모듈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샤시모듈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소재인 철판, 특수강, 파이프, 주철, 알루미늄, 고무의 국내외 시세가 인상되었다는 사유로 2003. 6. 25. XXXX(주)로부터 구매하는 9개 차

종의 사시모듈부품의 재료비를 종전 재료비 대비 8.5% 인상하기로 결정
이와 관련, OOOO(주)는 인상조정 시기를 2003. 1. 1.자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2003. 1. 1.~ 2003. 6. 30. 기간 중에 이미 납품받은 사시모듈부품에 대해서는 2003.
6. 30. 32,019백만원을 정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였고, 2003. 7. 1.~ 2006. 12. 31.까
지는 인상조정된 단가로 사시모듈 부품을 납품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74,766백만원
을 인상지급 함으로써 모듈부품 재료비 인상명목을 통해 부당지원

【공정위 2007. 9. 5 의결】

- ○ 그룹 계열사들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회사인 '갑'(주) 등에게 '갑'(주)가 발
행하는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방법(지원성 거래규모는 148,000백만원이
고, 지원금액은 후순위자금대여의 특성상 정상금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산출되기 어
려움) 저리로 대출하는 방법(3,678만원 지원)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우회지원 방법
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19억 5,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공정위 2005. 5. 30. 의결 제 2005-074호】

- (주) ○ 이 관계회사인 (주) '을'에게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9,200
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위 2002. 8. 30 의결 제 2005-074호】

- (주) ○ 이 관계회사인 (주) '을'에게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9,200
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공정위 2002. 8. 23 의결 제 2002-177호】

- '갑'(주)가 계열회사인 '을'(주)가 발행한 만기 91일의 기업어음을 26%로 인수한 사안
에서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관계라는 점
 - '을'(주)는 3년간 연속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점
 - 영리를 추구하는 통상의 기업이라면 위 기업어음을 인수하기 어렵다는 점
 - * 인수금액이 '을'(주)의 1997년도 당기 손손실 457억 9,500만원의 46.5%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점
 - 위 기업어음을 인수하여 인수금액에 대한 정상할인율과 실제할인율의 차액에 해당
하는 4억 4,800만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계열회사인 '을'(주)에게 제공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한 자금지원임을 인정함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203】

(2) 부당한 자산지원

◎ 사례

- ○기업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2억 800만원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낮은 부동산 임대료 징수 등의 방법으로 6,600만원의 부실한 계열사에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1억 900만원 부과【공정위 2002. 8. 23. 의결 제 2002-174호】
- △△건설 등 6개사는 1998. 3. 20. △△증권 유상증자시 액면가 5천원의 신주 9,400만주를 3,200원/주에 매입하고 총 2,996억원을 지급, 당시 △△증권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금융위기상황에서 계열사 이외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고 6개 계열사는 증자참여전 △△증권에 대한 지분이 없고,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어 별다른 투자유인이 없었음
- ○○중공업은 1998. 6. 12. ○○증권 등 5개 계열사가 설립한 역외펀드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負(약 △3.3\$)임에도 불구하고 동 Fund의 순자산가치와 연계된 주식연계형채권을 10\$/주로 총 1,690천주(16,900천\$, 235억원)를 매입
- ◎◎화학은 1999.6.29. 보유중인 ○○석유화학 주식 2,744만주를 다수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함에 있어 1999.5월 ○○석유화학이 검토한 가격 및 '00.3월 코스닥 등록시 평가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5,500원/주(총 113,448백만원)에 저가로 매각
- ○○중공업 등 32개사는 1997. 5. 31. ~ 1997. 9. 30. 기간 계열사인 ○○전자산업이 신축중인 연구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연구소 건축비 300억원을 지원

(3) 부당한 인력지원

◎ 사례

- A은행은 2001. 10. 1. 부터 2002. 6. 30. 까지 사이에 계열회사인 (주)B파이낸셜코리아의 설립을 위하여 소속직원 6명과 신규채용 인원 1명을 포함한 7명을 창업준비위원으로 선정하여 창업준비 업무에 전념토록 하고, 동 인원에 대한 보수 등 총 437,339천원

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공정위 2006. 9. 20 의결 제 2006-205호】

(4) 부당한 상품 및 용역지원

◎ 사례

- (주)A 등 8개 계열회사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시 간사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B증권(주)의 중개실적을 높여주기 위해 비계열 증권회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 후, 비계열 증권회사가 회사채 발행회사들로부터 인수한 무보증회사채를 B증권(주)에 하인수 시키는 방법으로 B증권(주)에 대하여 하인수수수로 상당액 55억 3,100만원을 지원함
 - (고법, 대법)무보증회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간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를 몰래 빠져나가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형식적으로 간사업무를 담당한 간사회사를 통하여 실제 간사회사에게 무보증회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명목으로 하인수 수수료(Sub-Scriptor Charge)를 지급한 행위는 자금지원의 의도로 용역의 거래라는 형식을 취한 데 불과하므로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본 대법원 판결은 종래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되는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하급심 판결을 통일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6부는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그 대가를 정상가격에 비하여 유리하게 책정하여 지급하거나 계열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위는 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자금지원, 자산지원, 인력지원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지원행위로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 이에 반해 서울고등법원 특별 제7부는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
 - 본 대법원 판결은 거래형식보다는 지원내용과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면 그것이 상품 또는 용역거래라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자금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기업집단 『○○○○(주)』는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일원화·통합화하기 위해 물류전

문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업집단 『0000㈜』의 동일한 ○○○가 40%(10억원), 그의 장남 □□□이 60%(15억원)를 출자하여 2001. 2. △△△△(주)를 설립

- 이후 0000(주), 0000(주), XXXX(주), ◎◎◎◎(주), ■■■■(주)는 자신을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주)에게 사업양수도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함으로써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363,727백만원(법위반으로 보는 지원성물량은 484,440백만원, 지원기간은 2004. 6월까지) 상당을 △△△△(주)와 거래

【공정위 2007. 9. 5 의결】

- 현저성 판단기준으로서의 현저한 규모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 현저한 규모의 거래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의 입장)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현저한 규모의 거래 →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6) 유의사항

(1) 자금대여시 유의사항

-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 계열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차입금리를 적용해 당초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여야 함
-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는 약정상 대여금 회수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최

소한 대여금 지연회수 기한에 대한 이자를 추가(자금 대치회사의 차입 이자율 적용)로 수령하여야 함. 단,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의 경우 이자율을 불문하고 해당 행위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당지원행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정상이자율은 동기간의 종금사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함

(2) 자금예치시 유의사항

-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 등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자금대여의 경우 자금대차기업의 차입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자금예치의 경우에도 계열 금융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계열회사의 예탁금에도 적용해야 함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경우는 주식매매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시장 실제 금리와 예탁금리간 차이가 큼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종료 후에 예금잔액을 인출하지 않은 행위도 금리차이만큼 계열증권회사를 지원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예치기간에 단 하루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으로 봄
 - 예치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거래하지 않은 예치금액은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사에 예탁금 없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하므로, 주식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예탁 사실만으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3) 기타 자금거래시 유의사항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수수료, 자산 매각 대금 등의 채권회수 지연은 비계열회사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에 용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계약상 명기된 또는 일반적 회수기간 이후의 지연이자(당해 회사 일반적 자금조달 방법 기준 : 예)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권 회수시 약정된 지연이자를 수령해야 함
- 공동 광고시 광고비 배부는 광고에 따른 수혜의 정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예를 들면,

전년도 해당 매출액 비율로 분담율을 산정하고, 소비재와 중간재 구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소비재×2+중간재×1)하는 방법 등)

(4)기업어음(CP)거래시 유의사항

- 지원객체가 정상적으로 CP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가 발행한 CP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행위 자체를 지원행위로 봄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 CP만기,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객체 입장에서의 발행할인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Check하여야 함

(5)주식거래시 유의사항

- 자기의 지분 범위 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더라도 시가가 발행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제 3자의 참여가 전혀 없을 경우, 또는 증자 참여 사유, 시가 이상 발행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거래시 가격 결정 순서
 - 동일 또는 유사시기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기준에 따른 주식 평가액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단,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정보통신기업, IT관련기업 등)의 경우 상속세법기준에 따른 평가에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 성장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6)회사채 거래시 유의사항

- 위험도가 낮은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윤 추구를 위한 투자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행위에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금리, 가격 등의 적정성)를 마련한 후 거래를 함

(7)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매매시는 평가기관의 평가액 기준, 임대차 시는 주변 시세와 비교 또는 동일 건물 내 입

주한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 함

-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입주(계약) 전에 선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10%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8) 기타 자산거래시 유의사항

- 보유채권 매각은 동 채권의 정상가격을 산정(공인 신용평가회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하여 동 가격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간사회사의 제한)에 의해 무보증회사채 발행 시에는 계열증권사를 회사채 인수를 위한 간사회사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계열회사를 주간사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동 회사채를 계열증권사에 하인수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지적될 수 있음
- 영업 양수도 및 자산 매각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거, 동 평가액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함
- 결제 조건(기간 등)은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여야 함

(9) 부당한 상품 및 용역거래시 유의사항

- 동일 품목에 대한 계열사 및 비계열사 거래시 거래단가는 결제조건 및 거래 물량(월별 또는 연간 물량)등을 고려하여 차별없이 결정하여야 함
- 계열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내부 대금결제 기준에 의거, 비계열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져야 함
 - 계열사로부터 대금 회수는 해당 계열사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계열사 제품 구입 관련하여 구입대금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는 경우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됨
 - 회사 자금 무상지원 또는 대여가 없다 하더라도 판매목표 할당, 판매실적 관리, 급여 공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로 지적 됨

7)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
 -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 과징금
 - 법위반 관련매출액의 2% 이내(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5%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 이내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20억 이내)
- 형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 참고사항(보복조치의 금지 : 법 제24조의 2)
 -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 신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한 사업자에게 거래의 정지, 물량의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8) Q&A

[부당한 지원행위]

❓ OOOO(주)이 선박 주단조품으로 기존 거래하던 수급사업자와 단절하고 계열사인 XXXX(주)과 거래를 할 경우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가?

- Crosshead, Con Rod 등 선박 주조품
- 기존 거래업체의 잦은 불량 및 Capacity 부족으로 인한 적기 부품 공급 차질 등
: 기존 거래업체와 거래단절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품질, 가격, 납기 등)가 있어야 하고, XXXX(주)과 계약을 할 이유 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단가가 시장가격으로 거래하여야 부당한 지원행위가 되지 않으며 기존 거래 업체와 OOOO(주)이 거래타절시 그 사유를 기존 거래업체에 통보하고, 이의접수하여 공정하게 업무추진하면 됩니다.

❓ 설계용역 계약을 위해 해외법인인 △△△△와 계약추진 중 △△△△로부터 선금금 지급요청 받아, 계열회사에 선금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 해외법인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저촉을 받지 않음, 다만 우회지원을 통하여 국내업체를 지원하여 경쟁을 제한 또는 관련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금, 인력, 자산 중 선금금 지급은 자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선금금 지급이 소액으로 지원규모가 소액이고 발생 횟수 또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XXXX(주)에서 잉여자재 처분을 공지하여 해외법인인 ◎◎◎◎에서는 높은 가격이라도 구입을 하고 싶어, 처분부서에 문의를 하니 수의계약형태로 계약할 경우 부당한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 해외법인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고철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은 부당한 지원행위가 되므로 시장가격에 거래가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Q 계열사인 OOOO(주)와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증권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는지?

: 개별 계약건으로 판단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자금지원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수수료 상당액이 1천만원을 상회하지 아니하고, 경쟁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적인 거래에 있어 빈번히 계열사인 OOOO(주)에 대해 증권을 면제해 준다면 증권 발급 수수료가 상당하고, OOOO(주)에 증권을 발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때 부당 지원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권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계열회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 법에 근거하여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법에 근거하였다고 하여도 수의계약에 의한 물량이 많거나 낙찰율이 경쟁에 의한 낙찰율 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긴급성, 효율성, 보안성)에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될 우려가 적습니다.

❓ 공정위가 지원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부당지원 행위가 성립하는가?

: '지원금액'이라 함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 요건'(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것)과 '부당성 요건'(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 중 지원행위 요건의 결과인 지원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모회사사인 경우, 계열사와의 사무실 임대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하는 댓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외에 별도 추가금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임차인(자회사)의 임대인(모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 임차인(자회사)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임대료를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갱신을 대가로 임대인(모회사)에게 별도 추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금이 상당히 높은 대가에 해당하여 임대인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다면 지원행위가 성립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임대인인 계열회사의 경쟁조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하여 임대인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합니다.

❓ 정상가격이라도 상당한 규모의 물량으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부당지원에 해당되는가?

: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로 인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회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차별적 취급행위]

Q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원재료 판매업체의 영업정책 상 우리회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Q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비계열사인 A사가 계열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범위반인가?

: A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가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범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Q 설비제작을 의뢰할 경우 A라는 업체가 기존 납품한 설비의 품질이 좋고, 기술력 및 경험, 신속성 등 타 업체보다 우수할 경우 A업체 단독 설비제작 선정 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지?

: 거래 상대방을 선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굳이 입찰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Q 당사에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는 'A'를 비롯하여 6개회사가 있는데, 당사에게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회사인 A사에게만 대금 결제조건을 30일 어음으로 하고, 나머지 5개회사는 120일 어음으로 하는 등 차별한다면 이것은 위법한 행위인가?

: 이 경우 공정거래법 상 차별적 취급행위 해당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차별적 취급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회사가 A회사에 대해서만 30일 어음으로 결제하여 주는 이유는 거래상 열등한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보기 곤란합니다.

❓ 협력사 선정 시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을 고려한 공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문제점?

: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기준없이 거래하고 싶은 업체와 거래한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없이 계열회사와 거래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명확한 기준없이 협력사를 선정할 경우 분쟁을 일으키고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것이 우리회사의 기업 이미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부당지원행위]

❓ 상품 · 용역거래란 어떤 거래를 의미하는가? (상품 · 용역거래의 범위)

: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말합니다.

❓ 행정 상의 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을 위해 계열회사와 상품 · 용역등의 거래시 합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상당한 규모' 여부에 따라 제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당한 규모라는 것은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가?

: 비록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줄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규모 해당여부는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하거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협력사와의(계열사 포함) 거래시 계약서에 '단가변동이 있을시 검토 후 단가결정을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실제로 계약한지 6개월만에 현실적인 단가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조정하였다면 범위반에 해당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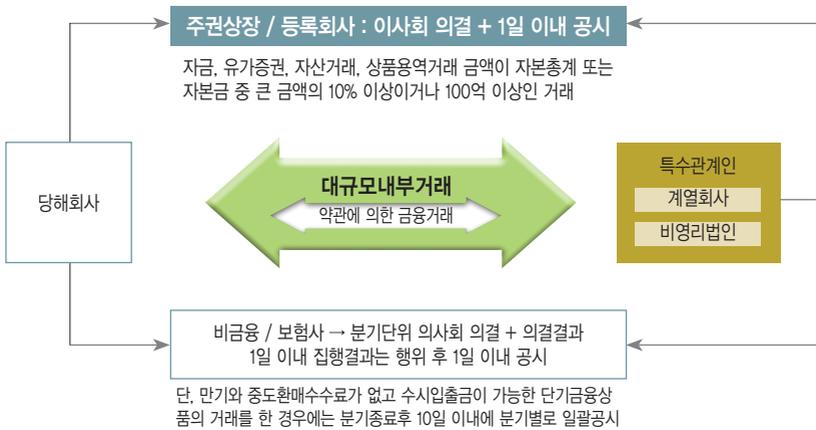
: 계약서 조항에 의한 단가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그에 상응한 정도로 단가조정을 하였다면 범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계열사와의 거래 시 단가산출근거를 토대로 적절한 검토가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의 단가가 경쟁사의 단가보다 높다면 범위반에 해당하는가?

: 적절한 검토 후 단가가 결정되었어도 비계열사와 거래되는 상품(구역)과 동일한 품질을 가진 상품 혹은 구역에 대해 계열사와의 거래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면 범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구역)이 다르거나 품질이 상이하 고 그에 상응하여 단가가 책정되었다면 범위반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11조의2)

(1) 개관



◎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우리 회사는 상장회사에 해당함

- 공시 대상회사
 -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상장사 및 비상장사 포함)
 - 해외 현지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포함되지 않음
- 공시의무 발생시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날(지정·통지일)부터 적용
- 적용대상거래
 - 대규모 내부거래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회사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 발행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 2007. 7. 14 개정)를 상대로 상품·용역을 제공·거래하는 행위로써,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내부거래 상대방 회사에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제외)

: 자본총계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기준

: 자본금 : 이사회 의결일 전일 기준

→ 따라서,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이를 포함함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됨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

→ 따라서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하는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됨

→ 【예시】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CP 등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계열사가 인수하는 경우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은 비계열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를 위하여 주식, CP 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내부거래에 해당 세부적인 공시방법은 거래 상대방 란에는 거래를 중개한 비계열 금융회사를 기재하고 거래내역란 중 채권(또는 CP 등)의 발행자란에 계열사를 기재하면 됨

• 대규모내부거래 유형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함

-유가증권 거래

: 주식,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거래하거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

1) 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② 동일인관련자(동일인의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인척4촌),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계열사 임원)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거나 제공받는 행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지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지적 재산
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한다.) 등의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자금 및 유가증권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을 말함

: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의 임대차거래, 영업권이나 특허권의
양도/양수 등이 포함

-상품·용역거래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회사 계열회사를 상대로 상품·용역을 제공·거래하는
행위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의결결과는 1일 이내에 공시

•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

◦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거래금액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의결 후 1일 이내 공시

• 분기 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은 상품·용역거래가 분기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 이사회 의결 가능

• 대규모 내부거래 판단기준

-동일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는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
위로 봄(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
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 동일 거래 상대방과 같은 날 약관에 의한 여러 건의 기업어음 거래가 동일 조
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 하나의 차입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 의무 여부를 판단함

- 동일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상품 및 용역거래)
- 거래금액 산정기준
 - 자금 거래 : 실제 거래금액
 - 유가증권 거래 : 실제 거래금액 (통일, 2007. 7. 14 개정)
 - 자산 거래 : 실제 거래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차 거래 등의 경우는 다음 기준 적용
 - 부동산임대차 거래 :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 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환산연간임대료 = 보증금 X 이자액]
 - :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호 (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
 -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담보/보증의 제공 : 담보/보증한도액
 - 보험계약 : 보험료총액
 - 상품 또는 용역거래 :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동일 상대방과의 분기별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판단, 2007. 7. 14개정), 2007년 4/4분기 거래분부터 적용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방법
 -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이사회 의결 절차 및 방법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다만, 상법 제30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에서의 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보지 아니함 [07.1월부터 이사회 위원회 의결을 이사회 의결로 간주함(입법예고)]
 - : <참고> 상법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공시시기 및 방법

- 공시시기
 -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가 상장법인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
 - : 공시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최초영업일까지 공시
- 공시방법
 -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 : 공정거래법 상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 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 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 다만, 공정거래법 상의 공시의무 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공시내용 및 양식
 - 공시내용
 -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 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의 총 거래 잔액 등
 - 공시양식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표준서식 준용
- 공시내용의 변경절차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 상대방 변경
 - : 거래금액, 거래단가 등의 20% 이상의 변경 등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행위에 대한 특례(공시규정 제9조)

비금융·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 별로 거래 한도를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가능. 다만, 의결 시 거래 대상, 거래 상대방, 거래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공시 : 의결 결과는 의결 후 1일 이내, 집행 결과는 행위 후 1일 이내 단, 만기와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거래 시는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 별로 일괄 공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의

: 공개시장(장내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 수익증권을 증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주로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채권거래의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됨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예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인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인수 / 매입하는 경우 · 채권(회사채, CP등)을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하는 경우 · CP 중계 · 인수 · 할인 등의 매매행위 · 수익증권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초단기 수익증권(MMF 등)을 계열 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계열 생보사에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콜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 ·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전환사채를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중도 전환하는 경우 ·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예시

	초단기 수익증권(MMF 등)	기타 수익증권(CMA, 발행어음 등)
거래한도 이사회 의결공시	· 잔고금액기준-의결기간내 총누적잔액	·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예상거래 건수의 거래금액 누적합산
사후공시	· 분기종료후 10일내로 분기별로 일괄공시	· 거래행위 이후 1일 이내
기준금액	1일 입금액	1회 입금액

2) 거래한도는 분기동안에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할 금액의 누적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분기별 거래한도에는 제한이 없음
3)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의결 가능함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규정 제9조의2)

일괄공시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의결결과는 1일 이내에 공시
변경공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
분기중 공시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위반 시 제재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본금액)(2009.12.18개정)

위반사항				기본금액(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 공시	누락한 경우	2,000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 (기일 초과 매1일당 10만원씩 가산, 5,000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5,000	
	기한 내 공시했으나 누락된 공시 사항을 공시 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기일 초과 매1일당 10만원씩 가산, 2,0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7,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공시사항 누락여부	5,000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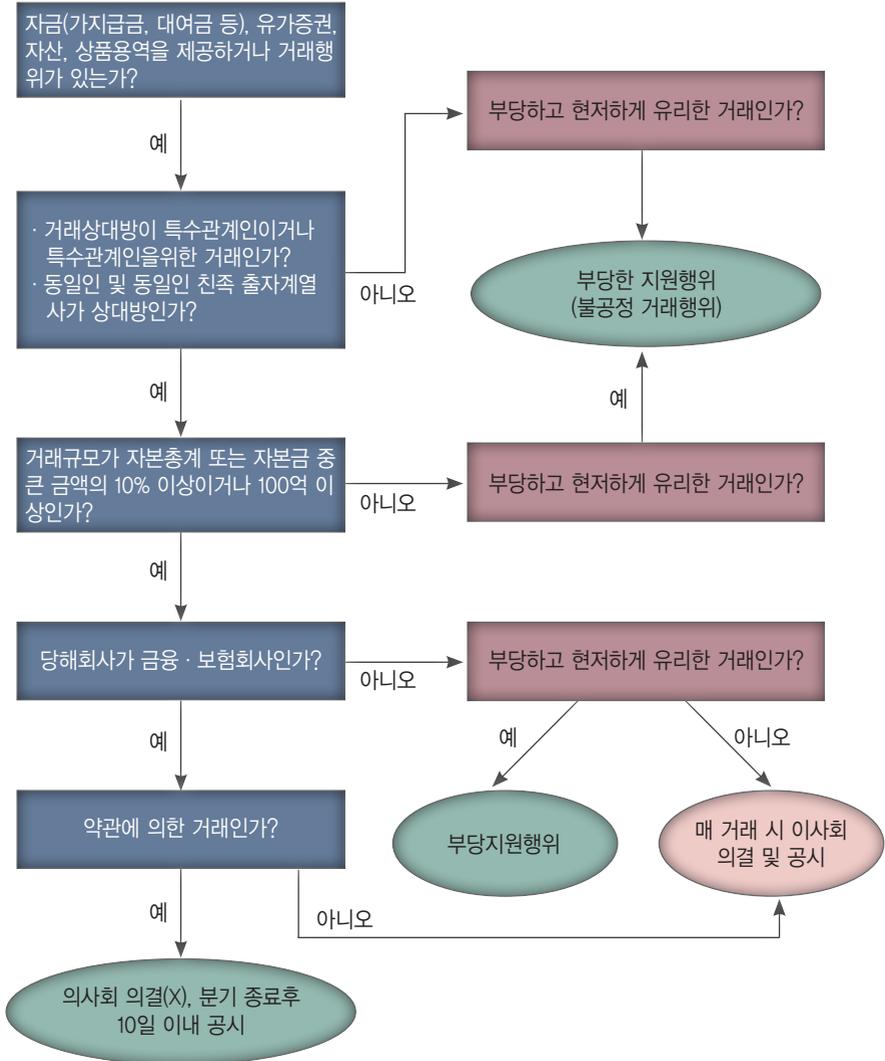
다음의 경우 과태료 부과 액을 50%범위 내에서 가중함	· 공시의무를 회피하게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당 10% 씩 가중
---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2009.12.18개정)

-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

거래금액	적용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 - 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0
20억원 미만	50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업무 인식요령〉



(2) 심결례 및 판례

◦ 사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주)△△가 해당계열회사인 AAA(주)와 건물 8,206,99평을 2000. 11. 1. 부터 2002. 10. 31. 까지 임차보증금 5,662백만원, 월임차료 566,282천원(총보증금 96,267백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그 의결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공정위 2004. 3. 22. 의결 제 2004-146호】
- (주)○○이 계열회사인 B(주)로부터 건물 1,210평을 월임차료 38,500천원(환산보증금 10,043백만원)에 임차한 것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7,000만원 부과【공정위 2004. 3. 22. 의결 제 2004-138호】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을(주)가 계열회사인 병(주)와 총 3회에 걸쳐 각각 115억원의 기업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총 9,800만원(7,000만원+1,400만원+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공정위 2005. 5. 30 의결 제 2005-076호】
- '을'(주)는 91회에 걸쳐 10개 금융기관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서 풀거래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고, 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5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토록 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우회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10억원 부과【공정위 2005. 5. 30. 의결 제 2005-075호】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예시)

- 일정한 거래 후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거래
 - 채권 ·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수익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 매입 후 중도 환매하거나 만기가 되어 해제하는 경우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수익증권을 출금하는 경우
- 비계열사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 어음거래약정(CP거래약정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 투신사와 계열증권회사간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증권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 대금을 동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한 계열투신사에게 입금하는 경우
- 진성어음이나 매출채권을 할인하는 경우

(3) 업무시 유의사항

◦ 공시점검 시 유의사항

- 납입자본금 변동현황 확인
- 계열사 편입일자 확인(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통지일 혹은 승인일 확인)
-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자동연장조항 관련하여 재계약 여부 확인
 - ※ 언제부터 부동산을 임대차 하여 사용했는지 그리고 공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상장회사, 코스닥등록법인 여부 확인
- 2003. 6. 3부터 공시기한 변경(기존 익일에서 6. 3일 이후에는 익일 또는 7일 이내(비상장사)로 조정)
- 주식의 장내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공시의무 미발생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계열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한도공시를 하지 않고 직접 행위시점에 공시하였을 경우에 공시양식에 이사회 의결 일자를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
- 상품 및 운영거래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주거래에 수반된 종속된 거래로 보아 공시의무 미발생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전환행위는 주된 거래에 수반된 종속된 거래로 공시의무 미발생
- 조기에 상환하는 행위는 공시의무 미발생
-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시에 증자하는 회사와 참여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공시대상 요건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공시여부 확인(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일 기준이 아님)
- 공시대상 거래여부 판단 시 거래금액에 부가세는 제외
-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거래 상대방, 거래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행위로 보아 공시여부 판단
- 소급의결, 사후의결의 경우 자료확보 후 협의하여 결정

10) Q&A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 여부]

Q 거래의 당사자 중 한 회사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회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거래 상대방의 거래행위가 기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발생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면 됩니다.

Q 타인 발행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금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이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Q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100억원 이상의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7년 3/4분기까지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의 상품·용역거래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었습니다. 다만 4/4분기 거래분부터는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회사 계열회사를 상대로 상품·용역을 제공·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가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2007년 3/4분기까지는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여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4/4분기부터는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회사 계열회사를 상대로 상품·용역을 제공·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습니다.

Q 계열회사인 ○○시스템(주)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제공 및 H/W, S/W 공급 및 설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거래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의 거래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계열 전산회사와의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용역 계약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합니다. 2007년 3/4분기까지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었으나 2007년 4/4분기부터는 동일한 친척의 지분이 30%이상인(2010.7.1일부터, 상장법인 30%이상) 경우, 귀사와 ○○시스템(주) 모두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관계인과의 임대차계약의 중도변경에 관한 사항)2004년 12월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2010년 6월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차계약의 환산연간임대료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나 종전 계약과의 차액은 20% 미만일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지의 여부?

: 종전 거래금액의 20% 이상의 변경 시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한 변경공시의 취지는 이미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시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변경계약이라 하더라도 종전 거래금액과의 차이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Q 계열사가 기공시 된 내용에 따라 자사주신탁(펀드)에 가입한 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자사주를 매입한 경우, 동 매입행위가 공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자사주를 공개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도 아니며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아니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사주신탁(펀드)에 가입한 회사가 수탁금융회사(은행 등)에 지시하여 계열증권회사를 통하여 자사주를 매매하도록 하였어도, 이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열증권회사는 단순히 계열사주식 매매의 창구역할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계열사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사주신탁(펀드) 가입회사나 계열증권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에서 자본총계와 자본금의 기준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총계와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자본총계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약관거래 시 분기별 거래한도의 제한여부?

: 공정거래법 상 동제도(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특례)의 목적은 분기 별 약관거래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래한도를 사전에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 있는 경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거래 시 분기 별 거래한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계열사 A가 계열금융사 B에게 MMF 70억 입금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계열금융사 C에게 가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억원 인가 아니면 30억원 인지의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의 판단은 거래 상대방 별 그리고 거래건 별 기준입니다. 따라서 계열금융사 C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없이 가입할 수 있는 MMF의 한도액은 100억원입니다.

❓ 비금융계열사의 MMF 등에 관한 분기 별 한도 의결 시 포괄적 공시인가 아니면 회사 명이 지정되어 있는 구체적 공시인지의 여부?

: 분기별로 한도 등을 의결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공시와 마찬가지로 거래대상, 거래 상대방, 거래목적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시가 필요한 경우 공시의 시점은 입금 전인지 아니면 전후 몇일 내인지의 여부?

: 비금융·보험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하여야 하며, 또한 의결내용에 따라 실제거래를 한 경우에도 거래 후 1일 이내에 동 거래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Q 관계사가 다른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공시대상인지의 여부?

: 타계열 금융회사를 통해서 계열사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도 직접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이므로 공시대상이 됩니다.

Q 영업권 양수도 계약 시에는 어느 양식에 공시를 합니까?

: 주요 고정자산의 취득·처분의 양식에 합니다.

Q 이사회에서 분기의 거래한도를 의결하고 이를 공시한 후 분기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도를 다시 의결하고 이를 공시하면 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한도의 초과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한도를 이사회 의결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채권의 경우 장외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의 장외거래도 주식의 장외거래처럼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채권의 경우는 장외거래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합니다.

Q 수익증권의 거래를 하기 위하여 한도의결을 할 때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 지정하여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계열 투신운용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거래 상대방을 지정합니다. 즉, 계열증권사를 통하거나 비계열 증권사를 통하거나 계열 투신운용회사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열 투신운용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하여 한도금액을 의결하고, 만약 비계열 투신운용회사에 운용하는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가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열 증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한도금액을 의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MMF와 같이 투신운용사를 모른 채 계열증권사에서 판매하는 MMF에 가입할 예정인 경우에는 계열 증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한도금액을 의결하면 됩니다.

Q 대출금 만기상환시 공시의무 발생 여부?

: 차입의 부수적인 결과로 나타난 대출금 상환행위라면 공시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 상환도 만기 상환과 같이 차입이라는 일정한 거래 후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거래행

위에 해당되므로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Q 부동산 매매 행위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 금액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의결·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 간에 거래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 대상이 동일할 경우(예: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에는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 대상이 다를 경우(예: 당초 계약 분 토지의 인접 토지거래)에는 추가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 행위이므로 추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부동산매매 계약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차 금액이 상향조정 되어 대규모 거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Q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공시 여부?

: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Q 국세청에서 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과 관련한 간주 이자율을 '04. 9. 30 기준 4.2%에서 3.6%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는 바, 공시규정 제8조에 따라 거래금액이 당초 의결보다 20% 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변경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 공시규정 제8조에서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가 주요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거래금액 산정]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이 하루에 발생하는 총거래금액인지 아니면 1회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인지의 여부?

: 거래금액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1회의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금액입니다. 그러나 주식거래의 경우, 1회 거래라는 개념이 모호하므로 1일 매입 또는 매도 금액의 총합계를 1회 거래로 봅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기준이 입/출금 금액 합산인지 아니면 입금액인지의 여부?

: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금액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고 일정한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출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일 거래 대상과의 거래를 수차례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 처리 관계는?

: 동일 거래 대상과의 동일 목적의 거래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회피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등을 통하여 적발되면 불성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되어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기 수익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한도 등을 의결할 때 거래한도의 기준인 잔고금액이 1일 입금잔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결 대상 기간 내 총 누적잔액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 잔고금액은 의결 대상 기간 내 총 누적잔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는 의결 대상기간 도래 전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잔고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단기 수익증권을 거래할 때에는 별도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고 거래사실에 대하여 공시만 하면 됩니다.

다만, 초단기 수익증권을 제외한 여타 한도의결의 경우에는 의결 대상기간내 예상 거래건수의 거래금액 누적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을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합계금액으로 하여야 합니까?

: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수익증권은 MMF와 기타 수익증권으로 구분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동일 투신운용에서 운용하는 수익증권 및 MMF는 수익증권과 MMF로만 구분하고, 그 안에서는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즉, 수익증권 A1호에 50억원, A2호에 60억원, MMF1호에 30억원, MMF2호에 80억원을 가입한 경우 공시는 수익증권 110억원, MMF 110억원으로 공시하면 됩니다.

❓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경우 연간 임대료 산출 시 관리비도 포함 되는지 여부?

: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축공사계약 및 부동산 매매계약 금액이 부가가치세(VAT)포함가격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 (VAT)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기준입니다.

❓ 증금사에서 취급하는 CMA, 발행어음 등과 관련 이사회 결제한도 금액은?

: 이사회 의결 시 의결하여야 할 한도금액의 기준은 예상 거래 건수의 거래금액의 합산금액입니다. CMA, 발행어음 등은 초단기 수익증권과 같이 수시 입출금은 가능하나, 만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거액의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1일 총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미만이며, 100억원 미만일 경우

→ ① 4월 12일 : 거래금액 90억원

→ ② 4월 14일 : 거래금액 50억원

→ 합계 : 거래금액 140억원

→ 위 경우에도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지 여부?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래는 모두 건별 기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동일목적을 위한 동일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

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 · 용역거래] : 이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부터 시행되므로 특히 유의합니다.

❓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30%, B사 발행주식의 30%, C사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 C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2010.7.1일부터, 상장법인인 경우 3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 ·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 ①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B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②의 경우 B사, 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며, 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3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0%(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2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 B와 C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 · 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2010.7.1일부터, 상장법인인 경우 3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며, ②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며, 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3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0%(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2010.7.1일부터, 상장법인인 경우 3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B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며, ②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며, ③의 경우 A사, 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4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0%(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25%)를 소

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와 C사는 비상장법인)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 공시 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2010.7.1일부터, 상장법인인 경우 3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 ②, ③의 모든 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무의무가 없습니다.

Q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만 포함되는가?

: 동일인 및 동일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릅니다.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당사의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 아래와 같은 상품·용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여부는?(당사의 자본총계는 1,000억원이며, 아래 계약 이외의 상품용역거래는 없음)

계약 ① : 계약기간(09.1.1~09.12.31), 거래(매출)금액(400억원)

계약 ② : 계약기간(09.3.1~10.2.31), 거래(매입)금액(300억원)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내역)(단위 : 억원)

	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1/4분기	합계액
계약①	70	100	110	120		400
계약②	20	70	80	70	60	300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09년 1/4분기 및 09년 1/4분기의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09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09년 2/4분기부터 4/4분기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009. 9. 30. 2008년 4/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10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중 거래금액이 1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당사의 자본총계는 1,000억원임)

: 거래금액의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주요내용 변경에 따른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공시한 거래금액의 2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당해 분기 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비상장사는 7일) 이내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Q 2009. 9.30. 2009년 4/4분기 상품·용역거래(거래금액 100억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였으나 분기 결산 결과 거래금액이 70억원인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당사의 자본총계 1,000억원임)

: 거래금액의 20%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요내용의 변경에 해당되지만,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Q 2009. 9. 30. 08년 4/4분기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이 80억원으로 예상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 12. 1. 새로운 상품·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09년 4/4분기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당사의 자본총계는 1,000억원임)

: 당해 분기 중 거래금액이 100억원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일 이내 공시하여야 합니다.

단, 새로운 상품·용역계약 체결이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

❓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 상품·용역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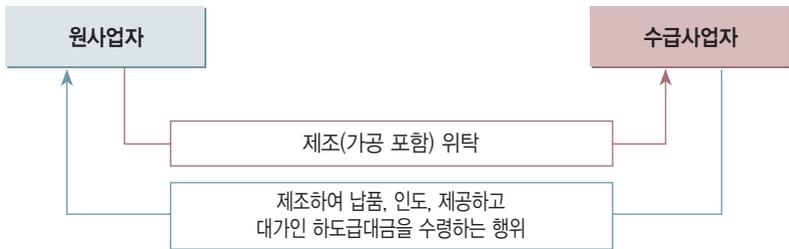
❓ 콘도 및 골프회원권 등의 거래는 상품·용역거래인지 자산거래인지?

: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상품·용역 거래에 해당하며,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다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은 자산거래에 해당됩니다.

5. 하도급거래 관련 유의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인해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용역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당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수리·건설위탁이 있음
- 또한, 반드시 원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즉, 형식상 (원)도급관계로 보이지만 도급인이 자신이 직접 제조, 용역서비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음

(1) 제조위탁

①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함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 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임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함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함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함. 예를 들면,
 -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시 등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바, 수납 케이스 등
 - ▶ 상품이나 제품과 일체로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용 물품 등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함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함.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

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

②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차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2)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예외

적으로 건설업자가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 건설업자의 제조위탁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엘리베이터)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별도의 시방서 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단, 레미콘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 기준 광주, 강원도,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만 적용
- 건설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불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3)수리위탁

① 수리위탁의 개념정의

- 「수리위탁」: 물품의 수리를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및 그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수리하고 있는 경우,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② 수리위탁의 종류

- 유형 1 : 물품의 수리를 도급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수리업자가 도급받은 자동차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유형 2 : 자가 사용하는 물품을 자가 수리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행위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류나 설비기계에 부속되는 배선·배관 등의 수리를 사내에서도 행하고 있는 경우 예,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사업자가 「그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리를 반복·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의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단순히 수리하는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2) 법적용 대상

(1) 법적용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자로 편성되어 있다가 대기업자로 분류된 업체는 3년간 중소기업자로 인정함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됨
-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당사에 표준품이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님 즉, '당사가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함
- 대·중소기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임. 즉,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것임
 - 그러나 하도급 조사의 수검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사업장, 어느 사업부를 살펴봐도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물대를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 LOSS 및 조사시 느장 대응으로 조사관들의 불신을 초래해 원활한 조사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2)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

-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함

(3) 하도급법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

-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해석상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3)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 상의 규제내용

(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법 제3조)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음(하도급법 개정, 2010.1.27, 2010.7.26 시행)
- 구두발주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원료 기일, 하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 금액과 어음 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 기일/결제 기일/결제 방법,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2008. 9. 30일부터 시행)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됨.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예외

-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함. 다만 원사업자는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 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 기일, 검사의 결과 및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급부의 취급,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이의 내용 및 이유, 하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하도급 대금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증감액 및 이유, 지급한 하도급 대금/지급기일/지급수단,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음 금액/어음을 교부한 일/어음의 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일/결제기일/결제방법,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지연이자액 및 지연이자를 지불한 일,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 또는 원재료 등의 대가를 공제한 경우는 그 후의 하도급 대금의 잔액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계약서면은 하도급계약 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계약 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하도급법 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함
 - 주관적 요건
 -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는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와 원사업자가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임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함

- 부당한 하도급 금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i) 현저하게 낮은 가격수준인가(통상 지불하는 대가와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와의 괴리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급부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가격동향 등) ii) 부당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가(하도급 대금 결정방법)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행해지고 있었는가)의 대가의 결정방법)와 대가가 차별적이었는가 등의 결정내용을 기초로 사례별로 정당과 부당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이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가(결정방법)등에 포인트를 두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함

-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예시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 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국내용과 같은 물건을 수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닐 경우, 협력사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③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 아님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저가심의회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
 - 저가심의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을 것

④ 부당특약 금지(하도급 법 제 3조의 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특약의 기준
 -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부당특약의 예

- 서면에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철근, 흙관 등 자재의 하차비, 현장 내 소운반, 야적장 임대료 및 보관비 등 모든 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 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공급자(수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공급자(수급자) 소속의 근로자 산업재해로 발생한 비용(진료비, 합의금 등)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현장설명서에 명기된 사항은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공급자(수급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한다.
-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와 관련된 각종 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품질 및 시공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게 요청하지 못한다.
-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으로 인한 비용이 계약금액 대비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자(수급자)는 원도급공사 준공시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공사비용 증액없이 보수작업을 하여야한다.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돌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공급자(수급자)가 부담한다.

- 공급사(수급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회사가 제공한 재료로 공급자가 가공했을 경우 해당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하도급계약 기간 중에 수해, 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
-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5% 범위내에 계상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를 포함한다.
- 공급자의 공과잡비는 직접공사비 대비 견적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 공급자(수급자)의 이윤은 별도 표기하지 않고,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포함한다.
- 공급자(수급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
- 하도급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 계약기간 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⑤ 업무상 유의사항

- 정부발주공사에서 원도급 금액의 82%(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이 결정된 경우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범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대금 결정방법의 부당성, 대금수준의 현저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양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2)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①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법 제8조)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함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예시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발주취소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②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 부당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예시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물품구매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 언급 없다가 건설위탁 후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 자재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이므로 물품구매강제는 아니나, 계약당시 자재사용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한 하도급 대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차액보전 및 증액 필요함

③ 내국신용장개설 의무(법 제7조)

- 수출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다만, 신용장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하면 적법
- 적법한 예시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미개설 사유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혜택을 보는 원사업자가 입증

④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법 제9조)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이 진행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함
- 제조업의 경우 대량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납품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설
 - 검사의 방법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음
 - 검사결과와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함
-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 업무상 유의사항

- 목적물을 수령한 날 = 공사의 시공 또는 기성 통지일을 말함
- 서면 통지가 원칙이므로 구두통지는 범위반입
-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 제출 경우 목적물인수일은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며, 검사 결과통지일무에 따라 10일내에 인수하여야 함

⑥ 부당반품의 금지(법 제10조)

◦ 부당반품 예시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정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⑥ 부당감액금지(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함.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됨. 값을 깎아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함.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됨
- 부당감액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

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 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을 저가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달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 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 1)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 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임
 - ‘제품을 싼값으로 수수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서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됨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총

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입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함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됨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료로서 하도급 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입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입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임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불하지 않는 것

2)건설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현장소장과의 협의를 거쳐 견적가를 조정한 후 선 시공 하였으나, 후에 본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선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견적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시공한 후에 견적가에서 현저히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위반소지 있음

3)수급사업자의 작업반장이 사망한 산재사고 처리시 피해자측과 직접 합의하는 방법을 채택과정에서 합의보상비 중 일부 금액을 수급사업자의 협의없이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산재발생율이 높아지면 공사입찰시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이 되므로 산재보험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관행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행위에 해당

⑦ 부당경영간섭 금지(법 제18조)

- 부당경영간섭 예시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량 조정, 수급사업자 임직원 선임 등
 -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지침, 05.9.15)
 -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지침 '05.9.15)
 - 업무 상 유의사항 산재보험료 산출 위해 임금대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범위반 아닌
- ⑧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법 제19조, 제20조)
- 부당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력사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⑨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등(2010. 7. 26 시행)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함
-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예시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3) 하도급 대금 지급단계

① 선금금 지급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금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금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함
-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를 적용)를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금금 = 지급받은 선금금 X 하도급률
- 업무상 유의사항
 - 선금금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금금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임
 - 원사업자가 기성대금을 지급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았다면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지급한 기성대금을 공제한 잔여 하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금을 지급함
 -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월 1회 기성정산 후 60일 이내 지급과 동조 제3항의 발주자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지급받

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중 어느 조항으로 적용 또는 우선하는지에 대하여는 제 13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의 보완조항으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제1항의 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한 것임

②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위 기간(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5%의 지연이자를 부담

③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법 제13조)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불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지연이 됨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한편,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 상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업무상 유의사항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 상 하도급 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음.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A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 대금×0.075×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식 동일)

B 지연이자 지급의무(선금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09.9.15))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를 적용) 지급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 대금 × 0.20 × 지연일수 / 365일

C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수급사업자가 이행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3조(과실상계)에 따라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수령하라고 통지한 날부터 실제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공제하여 처리함

D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액에서 현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지급액}}{\text{하도급 대금지급액}} \times 100$$

④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2010. 7. 26시행) (법 제16조)

- 요건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 함
 - 하도급 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으로 규정 적용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예시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함 →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 부당이득

■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2010.7.26시행)

-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함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가능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함.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
 -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률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능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Escalation)를 적용받았다면 ESC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하도급 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

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 09.6.5)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요청(신청)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됨
 - 2009.4.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개정 하도급법 공포·시행)
 - 2009.5.1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의 구체적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공포·시행)
 - 요건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조정신청권)
 -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함
 -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 거부·해태 유형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조정협의를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범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⑤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⑥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부당결제청구 예시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⑦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법 제13조의2)

- 원사업자는 공사착공 이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이행보증(10/100)을 하여야 함
- 보증 방법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함
- 보증서 교부시기
 - 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보증 금액(보증내용)
 - 공기 4개월 이하 : 계약금액-선급금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이내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4
 - 공기 4개월 초과, 기성주기 2개월 초과 : (계약금액-선급금)/공사기간(월수)×기성주기(월수)×2
- 보증면제
 - 1건 공사금액 4천만원 이하('05.7.1 이전은 3천만원 이하)
 - 2개 이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 A이상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 합의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을 결정함
- 업무상 유의사항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원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
 -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 안됨
 - 계약기간 중 회사채 평가등급이 강등되어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나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공사금액 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공사금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야 함

4) 발주자의 의무사항

(1)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 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

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
- ①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성검사·확인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됨
- ②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함.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지급하면 됨
- 업무상 유의사항
-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하도급부분에 관한 채권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함에 따라 발주자의 공탁은 무효이므로, 하도급분 상 직접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00.5.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결정)
 -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하도급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지급 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가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제가 가능

(2)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절차

- 직접지급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발생(도달 : 수급사업자가 증명)
- 직접지급 시 공탁사유가 있을 때 공탁가능(직접지급 효력 발생 전 가압류 등)
- 발주자는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시행령 §4)
- 원사업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직접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

(3)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등과 직접지급제도

- 가압류와의 경합시 직접지급 우선 성립요건
 - ① 시공분이 발생하여야 한다(미시공분까지 보호하지 않음)
 - ② 가압류 전에 3자합의가 있는 등의 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
-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 동 가압류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에 해당되어 무효
 - 이 경우 발주자는 (가)압류에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함
- 직접지급사유 발생전 (가)압류명령 등이 먼저 송달된 경우
 - 하도급법 상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이 경우 발주자가 직불하지 않고 공탁처리
-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하여야 함.

5) 위반시 제재

(1)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단서

신고

심사불개시

사건심사 착수보고

2. 사건의 인지

사건심사 착수보고

3. 사건처리

조사중지

범위반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
부 판단곤란

위반행위 시정
조치
이행확보곤란

범위반

대기업자

심의절차종결

종결처리

시정명령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행위 경
미, 시정조치
실익없음

위반정도가 중
대하고위반동
기가 고의적

악질적이나
상습적인
경우

지나치게 악질
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

경고

공포명령

과징금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경고

(2)과징금부과(하도급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09.8.20)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
- 원칙적 부과대상
 - 상습범위반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범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구분한 후, 다시 유형별로 세분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

〈중대성 및 파급효과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기준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비고
위반행위 유형	서면미발급,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보복조치, 탈법행위	·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거래 서면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제외
위반금액	3억원 초과	
위반행위 수 수급사업자 수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 과징금부과 절차 및 예시
 - 최근 3년간 법 위반행위 : 시정명령 4회, 경고 6회, 과징금 1회
 - 법 위반유형 :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법 위반금액 : 364,823,000원
 - 하도급거래금액 : 364,823,000원
 - 고려사항 : 하도급 대금 100% 현금결제
- 과징금부과대상행위

행위유형	세부위반 유형	위반금액	비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216,497,000원	
위반금액	◦ 지연이자 미지급	148,326,000원	
합 계		364,823,000원	

- 과징금부과점수(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첨2에 의거 산정)

행위유형	내용	부과점수	가중치 반영점수
① 위반행위 유형(0.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40	16
② 위반금액의 비율(0.2)	364,823,000원/ 2,711,212원=0.13	80	16
③ 위반행위의 수(0.2)	2개(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60	12
④ 과거의 법 위반전력(0.2)	위반별점 9.5점	100	20
계			64

- 기본과징금 : 249,000,000원
 - 1) 하도급 대금 : 2,495,000,000원
 - 2) 과징금 부과율 : 5%(70점까지)
 - 3) 과징금액 산정 : 249,000,000원
 - 하도급 대금의 2배(4,990,000,000원) × 과징금부과율(5%)
- 조정과징금: 249,000,000원 · 49,800,000원(249,000,000원*0.2)=199,200,000원
 - 현금성결제비율 10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20% 감경
 - 가중사유 및 비율

가중사유	요건	해당여부
조사거부 · 방해 · 기피 등	위반사업자 또는 소속 임원 · 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20%)	
임원의 법 위반 가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10%)	
보복조치 · 탈법행위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위탁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 행위	과거 3년간 서면미교부행위로 시정조치(경고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고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미교부행위를 한 경우 (10%)	

· 감경사유 및 비율

감경사유	요건	해당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시정한 경우(20%)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시정한 경우(10%)	
현금성결제 우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인경 우 (20%)	해당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90% 이상 인 경우 (10%)	
협력적 계약 체결모델사용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 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사용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 는 경우 (20%)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 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 부과 과징금 : 199,200,000원(감면조건 없음)

· 과징금 감면요건

구분	요건 내용	해당여부
감면 요건	과징금이 위반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한 경우	
	과징금이 법위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 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	
	법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규모 등에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	

(3)벌점부과

-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
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유형별 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2009.5.13 개정)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	0.5	1.0	2.0	2.5	3.0

(4)인센티브(하도급공정회지침 23, 벌점부과기준 시행령 제14조의4)

- 벌점은 1회만 경감됨

요건	인센티브내용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i)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 으로 지급하고 ii) 법 위반행위가 없는 원사업자 iii) 경쟁입찰비율 90%이상인 원사업자	i) + ii): 2년간 (조사년도 익년도 및 차익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i)~ iii): 1회에 한하여 하도급법 관련 현 장직권조사 면제
직전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특별교육 이수	과거 3년간 점수누계에서 2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1점(대표), 0.5점(임원) 감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상생협력관련 가이드라인 사용 현금결제비율 90~100% 현금결제비율 100% 전자입찰 80% 이상 우수업체 전자입찰 80% 이상 우수업체	과거 3년간 점수누계 3점 감점 가이드라인 1개당 2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0.5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1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1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0.5점 감점

(5)손해배상

-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짐.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 및 위탁취소, 부당한 수령거절, 부당한 감액, 기술자로 요구 및 유용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는 해당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고발권 확대

- 하도급 법 위반 시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 고발할 수 있음.
- 기존에 검찰총장만이 가능했던 고발요청권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게까지 확대함.

6) 업무시 유의사항

(1) 납품조정에 대한 성실한 대응자세 견지

-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됨

(2) 하도급법 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 협력사의 사용 양식(제출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の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리위탁에 있어 수리해보지 않고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한 역무제공위탁에 있어 그 기간에 제공한역무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
서 인정됨

-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는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함

(4)가단가(仮單價)유의점

-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함

(5)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됨 나아가 0월 납입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7) 하도급거래 단계별 확인사항

(1) 서면(서류)보존기한, 불공정한 발주변경 및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해 놓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
- 불확실한 발주행위(단가미정, 납기미정)등의 발주(주문)서 발행금지
- 협력사의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협력사의 변경요청 공문 접수 후 처리(변경요청공문 3년간 보관)

- 다량발주를 전제로 단가결정 후 일부만 발주한 경우도 잔량에 대한 발주최소로 불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기간에 발주할 수 없는 물량의 약속은 금지
- 생산계획 취소 등 협력사에게 귀책사유 없이 발주최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력사의 생산현황을 확인 후 물량을 인수
- 확인사항
 - 거래기본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하였는가?
 - 체결한 계약서 조항에 불공정한 조항의 유무를 검토하였는가?
 - 계약서 작성시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였는가?
 - 협력사 선정 검토시 업체정보(자산, 종업원, 매출액, 종목 등)를 입수하여 검토하였는가?
 - 생산계획의 통보를 발주(주문)서로 대신하고 발주서를 미교부하는 행위는 없었는가?
 - 추가발주 및 납기변경 등 발주내용 변경에 대한 발주서 미교부 행위는 없었는가?
 - 불확실한 발주행위(위탁물 내용, 단가, 수량, 납기 미정 등)는 없었는가?
 - 기발주한 내용의 변경 및 취소가 발생한 경우 협력사와 합의 후 처리 하였는가?
 - 무리한 납기준수 및 제조 불가능한 위탁 등 납품 불가능한 내용의 발주행위는 없었는가?
 - 발주(주문)서를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지 않았는가?

(2)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 확인사항
 - 단가 결정시 협력사와 합의 하였는가?
 - 단가 결정시 복수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검토 하였는가?
 - 물가수준을 반영한 단가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가?
 - 원가인하 합의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 원도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단가결정은 없었는가?
 - 수의계약시 '저가 하도급기준' 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적용은 없었는가?
 - 단가결정시 검토한 증빙 등의 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였는가?

(3)부당한 수령거부

- 확인사항
 - 위탁물 수령 후 즉시 양식화된 물품수령증을 교부하였는가?
 - 물품수령증을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가?
 - 수출품의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인수증을 교부하였는가?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이 발주취소한 경우 사후처리로 기발주한 물량을 전량인수(수령) 하였는가?

(4)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 확인사항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켰는가?
 - 검사기준 및 방법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협력사와 협의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였는가?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는가?
 - 검사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에 대한 사유를 검사방법 협의시 합의하였는가?
 - 검사기간에 대한 합의서 및 10일 초과 사유증빙을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고 있는가?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지 않았는가?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반품되는 물품의 사유서(증빙)를 보관하고 있는가?
- 생산공정상 불량품 처리방법
 - 위탁물의 검사결과 통보 후 생산공정상 발견된 불량품의 처리는 생산부서에서 불량품과 불량사유를 첨부하여 구매부서로 반품을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1:1로 교환(불량사유서는 구매부서에서 3년간 보관)

(5)부당감액

◦ 확인사항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가?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지는 않았는가?

(6) 기타 불법 및 탈법행위

◦ 확인사항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에 위탁물과 관계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는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지는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지 않았는가?
-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가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는 않았는가?

(7) 관세 환급액지급

- 확인사항

- 협력사에게 정해진 기일 이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였는가?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사와 합의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지는 않았는가?

(8)하도급 대금지급

- 확인사항

-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는가?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협력사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의 요청 없이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을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사와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는가?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이 비계열회사와 다르지 않는가?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없는가?
-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9)대물변제

- 확인사항

-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자사 및 타사의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사로부터 하도급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희망하는 요청없이 상계 처리하지는 않았는가?

8)Q&A

 공장내 Crane/가공장비의 개보수 및 고장수리용역을 업체에 위탁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

이 되는가?

: 회사조직내에 수리를 위한 조직이 있고 정기검사나 간단한 수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대규모 수리작업을 외주로 줄 경우에는 수리위탁(크레인, 장비 수리)이 하도급대상에 포함됩니다.

Q 아파트 건설공사에 있어 신발장 및 싱크대를 제작업체에 제조위탁할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가?

: 모든 아파트가 동일 설계에 따라 건축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에 설치되는 싱크대 및 신발장도 아파트 설계도면에 의해 규격이 정해서 제조위탁되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에 범위에 포함됩니다.

Q 두산중공업에서 설계용역업체에 도면작성을 위탁할 경우 설계용역업체는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Ⅲ. 공정화지침, 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 수리, 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라.용역위탁의 범위, (3)사업자가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언급이 되어 있으며, 원사업자의 해당여부는 엔지니어링을 꼭 업으로하지 않더라도 설계부서를 회사에 두고 있고, 도면작업을 설계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성과물에 대해 검사를 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 기성을 지급하고 있다면 하도급법 상의 원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 발주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한 PJT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금 지급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경우 현금비율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담보대출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현금비율은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상매출담보대출의 만기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정하여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는 법규내용을 만족 시킬 수 있으니, 유념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발주처와 대금지불 계약조건에 따라 back to back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지불조건을 연계하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 무조건 back to back으로 대금지불조건을 연계하는 것은 하도급 법 위반소지가 많으며, 개별 발주품목에 따라 검사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TOC, SCD 후 10%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구매품목이 단순하여 외관검사, 치수검사 만으로 제품의 품질을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상기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납품 후 검사완료 시에는 대금을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부도처리 되어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미지급노임을 보상받기 위해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할 기성금에서 노임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압류채권에 우선하여 노임을 지불할 수 있는가?

: 최우선변제 대상 임금범위에 한하여 압류채권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사완료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증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증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기성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대금지급의무에 위반되는 않는가?

: 하자보증증권 상당액만큼만 기성금 지불을 보류하고,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할 경우 잔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품질불량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외 제작업체에 대해 주간단위로 불량개선사항을 두산중공업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 본 건 관련하여서는 법규에 정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당한 경영상섭여부에 대한 판단은 통상 업계에서 실시하는 관행을 살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위탁한 물품에 대해 품질불량이 발생한다면 그 물품의 품질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파악 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 및 시정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주간단위로 개선 사항 또는 진척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판단 되므로 사후 관리 부서인 생산관리부서에 부당성을 알리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확보를 위해 1차 사외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업하는 아니하는 작업분에 대해 재하도할 경우 2차 하도급업체 및 공정에 대해 회사에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는지?

: 2차 하도급업체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목적과 그 목적에 한정되게 운용한다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회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어떠한 업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지 추적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품질확보의 기본이라고 할 때 이런 행위가 관행적이며, 산업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단순히 2차업체의 간단한 정보와 작업내역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PQ승인통과하여야 하도급적격업체의 자격을 취득하여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속작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발주처의 요구사항일 경우, 최종 PQ승인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 PQ승인을 위해 사전작업을 추진한 부분을 원사업자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인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서 상에 명확히 '발주처의 통과기준'을 명시하고, 보다 공정하게 하기위해서는 2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Q통과 되지 않고 금전 보상이 전혀 없을 경우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가 선정하였으므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법규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서에는 최초 조정 후 "120일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는 문구해석에 있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일이 120일이 경과하여야 esc.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 Escalation 지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는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며, 변경계약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따를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공정화 지침에는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에서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을 해석함에 있어 입찰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

: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후에 계약체결할 경우 Escalation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도급계약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Q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PJT가 1년 6개월 연기되어 최종 Factory Election 도면을 작성할 수 없고, 계약서 상에 마지막 기성금은 발주처 승인 후 대금지급조건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연장에 따른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 마지막 기성분은 계약적으로는 미지불하여도 무방하나, 통상적인 계약연장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보상이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증권 연장에 따른 수수료는 기간연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에 따라 부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포장단가계약 업체와 Winning meeting을 통해 원가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하여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면 절감액을 상호 반반씩 share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가?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원가절감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원가절감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data에 의해 산출되고 자료가 backup되어야 하며, 원가절감 방안별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상호 동의하여 진행하여야만 공정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법 위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Q 계약서 서면교부시 적법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 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범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범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개설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한 방식을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Q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주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목적물 수령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

: 하도급법 상 목적물수령일은 실제 목적물의 점유개시 또는 인도완료 시점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납품이 빈번하여 양당사자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음

Q 원사업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확보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업체를 일정자격으로 제한할 경우 문제가 되는가?

: 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공정개선, 품질관리 등의 경영지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조건설정 등의 재 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위탁의 범위는?

: 하도급법 상 제조위탁의 범위는 광범위하여 모든 내용을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제조위탁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제조위탁받은 것을 동일한 업을 영위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제조위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가설비, 단순구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래 당사자간 상이한 견해가 지속되어 계약갱신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가?

: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도 변경된 작업에 착수하기전 갱신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견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일 경우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은?

- 업체명만 바뀐 경우
-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

: 하도급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규정은 없으나 다만, 질의에서처럼 업체명만 바뀐 경우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업체명과 사업자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그 원인이 합병 등의 포괄적승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회사가 소멸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것인지에 따라 거래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수출용 물품을 제조 위탁시 하도급업체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가 물품대도착약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의 법정기일인 15일이 지났을 경우 법에 위반되는가?

: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목적물의 치수, 전류에 건디는 정도, 인장강도 등을 당사자가 사전에 정하고 목적물 수령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하도급 대금 지급시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하고 어음할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다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가?

: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해진 하도급 대금에서 할인료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가 경영이 부실한 수급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등을 하면서 업체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 자금지원을 이유로 경영지도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지, 또한 이 경우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근거하여 재무제표 및 경영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공장 실사 요구에 대해서 특별

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발주량 조정 등의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되는가?

: 자료제출 또는 공장실사 요구거부가 발주량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양당사자가 정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발주량을 조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의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の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는 하도급 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면 좋은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주하

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가단가(仮單價)는 금지되는가?

: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 당사의 결산대책을 위해 발주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시켜도 문제가 되는가?

: 개별의 발주내용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주내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로 인하한 단가로 발주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가 되는가?

: 指定價로 일반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기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 약속한 納期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 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입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假受領으로 납입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지불기일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면 좋습니다(假受領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정식의 발주에 의하지 않고 예상을 해서 제조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가?

: 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발주로 수급사업자에게 일정수량을 만들도록 한 경우에는 서면교부 의무

위반에 머무르지 않고 수령거부에도 해당합니다.

Q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불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 대금 감액으로 범위반이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불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 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급 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걸맞는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 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0월 납입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 대금의 지불 전(수령후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 대금의 지불후에 반품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월 납입분을 익월 납입분으로 취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도급 대금도 익월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불했을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지불지연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법의 적용에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은 지불기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Q 당사는 항상 일정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재고수준이 항상 유지되도록 납입시키고, 이중 매월 당사가 사용한 분에 대해 익월말까지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 이러한 지불방식(支拂方式) 하에서, 수급사업자는 주문서를 교부받지 않음에도, 혹은 납기가 특정되지 않음에도 일정한 재고수준이 항상 유지되도록 납입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필연적으로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의무 위반(서면의 미교부, 교부지체, 기재사항 不備)나 지불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발주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때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또, 물가상승 등 내외적인 변수로 인하여 단가가 변동이 있을 경우 매번 변경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가?

: 납품이 빈번하고 단가변동이 수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수량, 단가 등은 발주서로 정함을 명백히 한 다음 이에 따라 발주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중 단가변동이 있거나 신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를 거쳐 단가합의서 등에 새로운 단가를 기재하고 서명이나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합니다.

Q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는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하도급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3조).

거래가 종료된 날이란 목적물을 납품한 날(제조, 수리위탁), 용역위탁은 용역이 완료된 날,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하도급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하도급법시행령 제6조).

6. 프로모션 관련 유의사항

1) 표시 · 광고의 의의

(1) 표시

- 사업자가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 ·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 · 회원권 · 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 ·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 포장

(2) 광고

- 신문, 잡지, 방송, 전기통신, 전단 · 팸플릿 · 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 · 간판 · 네온사인 · 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 · 서적 · 간행물 · 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 자료도 광고에 해당

(3) 위법성 판단기준

- 진실성 : 표시 ·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
- 소비자의 오인성(誤認性)이 있을 것(misleading)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음을 의미
- 거래질서 저해성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 부당한 표시 · 광고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으로 잘못된 선택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를 의미

(4)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유형(법 제3조)

- ① 허위/과장 표시 · 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예시
 - 상가분양광고를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年 수익률 20%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
-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
 - 예시
 - 분양물 가운데 위치한 타인 소유의 나대지를 녹지 공간으로 표시하여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③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사업자 등”)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예시
 - 인근시세에 비해 분양가 저렴
 - A상가 : 1억 (신촌역 부근, 3평)
 - B상가 : 5천만원 (인천, 3평)
 - C상가 : 7천만원 (남대문, 2평)
- ④ 비방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5) 예시

- ① 주택(아파트 포함)
 - 건축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허위광고
 -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노선 및 지하철역을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바로 인접한 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에도 지역 최고의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분양후 1억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② 상가

- 금융기관이 시행사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광고
- 분양물(소핑몰)에 대한 점포임대수익 지급을 약정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마치 임대수익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객관적 근거 없는 사례를 게재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
- 분양률이 저조함에도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광고
- 미래에 대한 단순 예상수익률임에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연 수익률 15% 보장)
- 특정한 시기에 상가개점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주변 점포의 권리금이 높게 형성된 것처럼 광고
- 허가검토 중임에도 지하상가의 출입구가 인근 주변상가와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주변상권에서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광고
- 단순히 입금계좌를 개설한 것에 불과함에도 자금관리기관인 것처럼 광고
-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
- 브랜드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외 100여개 유명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입점 순간부터 1억원 이상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것처럼 광고

③ 오피스텔

- 객관적 근거 없이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 최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광고
-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파트와 유사하게 침실, 주방, 드레스룸, 거실 등으로 칸을 구획함으로써 업무시설인 분양물이 마치 공동주택인 것처럼 광고
- 사실과 다르게 복층형 구조의 오피스텔 건축이 적법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처럼 광고
- 오피스텔임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아파트인 것처럼 광고

(6) 중요정보 공개제도(법 제4조)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 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율
 - 부동산 분양업종: ①건축허가 취득여부 ②대지소유권 확보여부 ③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④시행사, 시공업체명 ⑤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 별첨은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또한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기만적인 표시·광고)

(7) 표시·광고시 행동지침

- 개별사업단위에서 임의제작하는 유인물은 반드시 분사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
- 객관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허용, 부분적인 우수성을 전체의 우수성으로 표현하는 행위 등은 지양
- 사보, 홍보만화, 고객 안내문 등 대고객 홍보용자료도 광고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주의
- 인터넷, 사외유동망, 구내방송 등 사원끼리 유통되는 정보교환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
- 사소한 민원이라도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규제기관에 제소될 우려
 -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에 유의할 것
- 신규고객 유치시 대출조건이나 상품인도조건 등을 정확하게
- 이용자에게 안내, 계약내용과 다르게 가격 변동 행위 지양
- 광고 문안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입각한 것인지, 전문가가 아닌 평균이하의 지적수준을 지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오인성 검토
- 광고적으로 기발한 표현이라도 경쟁사 비방 광고 지양
- 부당 표시·광고사건은 고의 또는 과실 불문 ⇒ 사소한 부주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부동산 분양관련 부당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1차적으로 시행사(시공사)에 있음
 - 분양대행사 등의 관리에 철저
- 건설공사 및 분양광고 업무를 시공사에게 위탁할 경우: 시공사 책임
- 분양광고는 시행사, 시공사는 건설공사만 수행

- (공사도급계약 등에 의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위탁시) : 시행사 책임

2) 약관사용시 유의사항

(1) 약관법의 개념 및 운영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법 제1조)
- 약관이란?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함(법 제2조 제1항)

(2) 주요내용

- ①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법 제3조)
 -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② 설명의무의 대상 - '중요한 내용'
 -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인가의 판단기준은 고객의 이해 관계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
 - 법원은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이라는 기준을 제시
- ③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부장할 수 없다.(법 제3조 제3항)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함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당해 계약은 무효
-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약관해석의 원칙

- ① 개별약정우선의 원칙(법 제4조)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는 원칙
- ②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 원칙(법 제5조)
 -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 ③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법 제5조)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법 제5조 제2항)

(4) 불공정약관조항

- ① 일반원칙(법 제6조)
 -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제6조) : 사업자는 고객의 신뢰에 부응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를 기울여 고객 이익을 보호해야 약관의 공정성 확보하여야 함
 - ‘공정을 잃음’이라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함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해당

◦ 예시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사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임에도 재판의 승소/패소 여부나 패소비율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소송비용 일체 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조항

②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함
-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
- 일단 책임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법률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이나 법률상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무효.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위험의 분담은 채권의 목적이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급부 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취지에 더 합리적인가 하는 고려에 따름
- 예시

- 민법상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귀책사유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여타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는 것. 이는 실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손해의 산정이나 입증에 복잡하고 당사자간의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보다 중요한 목적은 채무의 불이행시 고액의 배상액을 지불토록 약정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 '부당하게 과중한지'의 여부는 거래유형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예시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권자의 실제손해액이 예상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하는 외에 별도로 연체료까지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④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민법의 해제·해지 관련 규정(민법 제543조~제553조)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지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증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예시
 -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고객의 해지/해제 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지/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
 - 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에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사업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지/해제시에 고객이 원상회복의무를 사업자보다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해제 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일부만을 환불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지/해제 된 경우에 이미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이자 및 연체료를 제외하고 원금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이 해지/해제되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을 붙이는 조항

⑤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예시
 -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타당한 제한사유를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자유재량권을 인정하여 일방적인 급부변경권을 부여하는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⑥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의 내용은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예시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액의 과다 등을 이유로 이익을 제기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박

탈함이 타당함에도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함에도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⑦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예시
 - 고객의 채무불이행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가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⑧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 고객의 대리인에게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
- 예시
 -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로 되는 경우 대리인이 그에 대한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이 약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리인이 그 이행을 책임진다는 조항

⑨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
- 예시
 -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⑩ 불공정 약관의 효과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함
- 시정조치
 - 사업자는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시정명령
 -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당해 약

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사용금지 권고

- 시정조치 권고 및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시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⑪ 법위반시 제재

-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제32조)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과태료)



행동지침

1. 입찰관련 유의사항
2. 경쟁사 모임 관련 행동지침
3.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4.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DOOSAN

Ⅲ 행동지침

1.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수주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1)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2)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입찰가격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4)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5)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3) 수주 수량 등에 대한 행위

- 수주수량 · 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4) 정보의 수집 · 제공, 경영방침 등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 · 제공
-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공공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2. 경쟁사 모임 관련 행동지침

- 1) 경쟁사 임직원과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 것(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
- 2)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 업계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할 것
- 3) 업계 공식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 부서와 협의할 것
- 4)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i) 이의를 제기하고, (ii)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할 것(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을 것)
- 5)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 할 것

3.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 1) 가격부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 것
 -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이 포함됨
 -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됨
- 2)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 것
- 3) 경쟁사로부터 위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길 것
- 4)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사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둘 것
- 5)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 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할 것

4.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라인

- 1)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할 것

[표현 예시]

 - 동업사 “협력” 강화
 - “업계공동대응(예정)”, “업계차원의 검토”
 - 타사와 정보 “공유”
 - “A사는 200x.10.1부터 추진예정”, “B사 5% 결정 예정”
 - “경쟁자제”, “경쟁지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장안정화” 협조, “시장 정화” 방안, “시장질서” 유지, 개선 필요
 - 업계간 “공조”, “협조” 체제
 - “당사와 지역”, “타사 지역”
 - “경쟁사의 조건은 당사 조건과 동일(xxxx 시행 예정)”, “L사 28%(당사 조정시 인하 예정), “월 x회 정기적인 교류활동”
 - “상위사 하위사가 시차를 두고 폐지하기로” 합의
- 3)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 4)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 5) 회사의 중요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 6)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 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할 것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

DOOSAN

IV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 유의 및 금지사항

(1) 거래거절행위

-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상호협의로도 없이 일시에 거래물량을 중단·축소 또는 계약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처의 매출부진 우려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거래처에 대한 거래중단 및 공급물량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 상대방 및 거래지역제한 등 경쟁제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거절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해지전 거래 상대방에게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기회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기간내 또는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2) 차별적 취급행위

- 거래처에 대한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판매업자에게만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공급자들이 가격유지 등을 목적으로 판매업자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공급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지불조건을 현저히 엄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3) 경영간섭행위

- 임직원의 선임·해임·변경 등에 대하여 자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사나 하도급업체가 타 거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4) 불이익제공행위

- 거래 상대방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내용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기에게만 해석권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 협력사나 하도급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2) 공정거래법체크리스트

(1) 구매단계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에 위탁물과 관련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지는 않았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지 않았는가?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사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

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가?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 중단을 하지 않는가?
- 협력사가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지는 않았는가?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 축소를 하였는가?
- 협력사의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협력사가 대내외 창구를 통하여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았는가?

(2)재정 및 회계단계

- 자금의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거래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 대금지급되는 날 수령하지 않은 협력사의 대금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는가?
- 채무관리를 목적으로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차별적 취급을 유도하는 전사적 지침이 영업 부서에 있지는 않는가?

2. 하도급법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

1)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

-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의미함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함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 함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함
- 하도급관계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함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 함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을 경과하지 말아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10일을 경과할 것이 예상된다면 미리 동반성장추진팀에 문의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함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한 경우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 함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함
- 위탁할 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함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함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 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함.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아야 함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함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대납품 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 함(형사 고발될 수 있음)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할인료 (연 7.5%)를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은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2) 하도급 법 주요 의무·금지 사항

의무사항(9가지)	주요 내용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제조 착수 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대금결정 서류 포함, 하도급거래 서류 3년간 보존)
원자재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대금조정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 하야 함. 수급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및 30일 이내 미합의의 경우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권 부여)

의무사항(9가지)	주요 내용
선금금 지급의무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지급* (현금비율 준수)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의무	수출물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검사기준과 방법은 쌍방 협의로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 서면통지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준공금,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금지 (상계처리불가, 유보 금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원사업자는 공사착공이전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10/100)을 하여야 함(1천만원 이하, 신용평가등급 A0이상 업체 제외)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 받은 내용에 따라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증액/감액된 경우에는 변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감액 (Escalation), 변동내용 통지의무

금지사항(13가지)	주요 내용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방법으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대금결정 금지(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 수의계약 시 직접 공사비 항목 이하, 다른 사업자 견적내용을 보여주거나, 다량발주단가를 소량발주에 적용하여 대금 결정 등)
물품 등 강제 구매금지	목적물의 품질유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물품의 매입 또는 사용 강요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주의 임의 취소, 변경이나 목적물의 인수거부 금지
부당반품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 수령 후 반품금지
부당감액금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 시 정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금지(60일 초과 지연지급시 연20%의 지연이자 지급, 초기 계약수량 대비 실제수량 감소)

금지사항(13가지)	주요 내용
물품대금 등 부당결제청구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사용케 하고 대가를 하도급 대금지급에 앞서 지급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하게 지급하게 하는 행위금지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 제공금지(찬조금,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아파트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인사권 간섭, 생산품목 제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제한, 품질/납기와 무관하게 재하도급 업체 제한)
보복조치금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 불이익 행위 금지
탈법행위금지	원사업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 적용 면탈행위 금지(위반사항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지급 후 대금을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기술자료 요청 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강요, 유용 금지
부당특약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금지

3) 하도급법체크리스트

관련조항	체 크 항 목(위반유형)	방법
제3조 (서면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가? ◦ 서면은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 교부한 서면에는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은 교부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을 검토

관련조항	체크항목(위반유형)	방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방법을 확인한 후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의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토 ◦ 위탁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 검토 ◦ 경쟁입찰인 경우 각 업체별 입찰가격과 낙찰된 가격을 비교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제8조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확인
제11조 (부당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시공물량은 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당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재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실제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기성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확인
제13조 (하도급 대금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지급기일을 지키고 있는 지? ◦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지? ◦ 현금결제비율은 지키고 있는 지? ◦ 어음만기일 유지하고 있는 지? ◦ 지연이자는 지급하는지? ◦ 어음할인료는 지급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원장 ◦ 어음대장 ◦ 구매카드 등 약정서

관련조항	체 크 항 목(위반유형)	방법
제13조의2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고 있는 지? ◦ 보증금액은 적정한지? ◦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지?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받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이행 및 계약이행증권 확인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및 ESC,와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 계약금액 조정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 계약서 상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는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약서 상 하도급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한 것의 실제가치가 하도급 대금에 상응하는지 여부 확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질의 Process

DOOSAN

V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질의 Process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질의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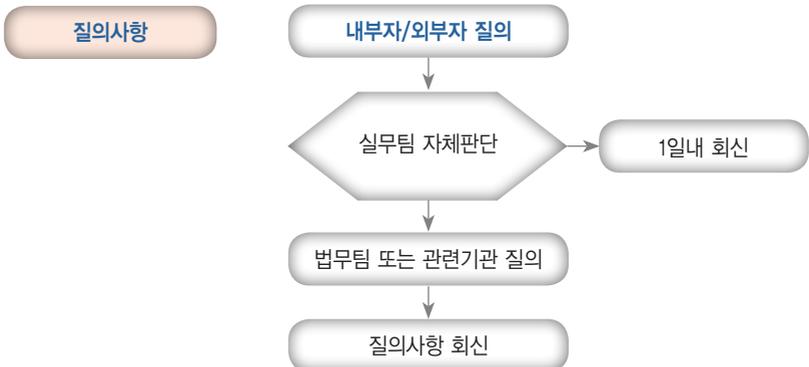
1. 신고/질의 사항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 대금 지급, 서면교부, 검사결과 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 부당내부거래행위
-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등

2. Check 사항

-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
- 가격결정 시 협력사와 합의하였는가?
- 일방적으로 계약취소하지 않았는가?
-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실비용에 대해 합의하여 상계처리 하였는가?
-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는가?
- 하도급 대금 지급시 부당한 감액을 하거나 대물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는가?
- 설계변경 또는 추가작업분에 대해 금액 상승분은 보상하였는가?

3. 처리 Process



4. 제보/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접수 담당자는 비밀 엄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내 의해 운영합니다.
- 임직원인 경우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정상참작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합니다.
- 내부신고자 신원공개금지, 색출행위 금지, 제시자료 유출금지를 준수합니다.

5. 위반사항 신고처

회사 홈페이지 ▶ 공정거래 ▶ '공정거래 상담/신고' 이용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 절차

DOOSAN

VI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대응절차

1. 법 위반 사전예방 대책으로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및 운영

대표적인 공정거래법위반 사전예방책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 임원 및 직원 개인의 형사상 면책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준수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특정 조직, 운영, 요원 및 영업 관행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예방 및 적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사개시 전 단계

1) 내부적인 조사의 필요

(1) 내부적인 조사시행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회사는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부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는 내부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내용과 가능한 파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한 조치이다.

(2) 내부적인 조사절차 확정

- 회사 내부의 조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정하여야 하며, 사내변호사/감사/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고, 과도한 조치로 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와 관련된 결재라인을 확정해 놓아야 한다.

(3) 문제가 되는 행위의 확정

-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후의 형사,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위법행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태도 확정

- 조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혐의나 증거 때문에 직원/임원과 회사간에 마찰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공공연한 분열로 이어질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그 논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감면정책의 이용 여부의 결정

3. 조사개시 후 대책 - 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 조치

1) 개요

- 조사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즉시 다양한 경로로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행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개시 전의 사실파악과 중복될 경우도 있으나, 조사개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회사는 다른 조사대상자들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확한 정보수집 및 그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2) 사건의 파악 : 사실관계의 파악 및 변호사 선임

(1) 사내 자료 보존 및 수집

-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하지 않도록 그 회사의 법률 고문/사내 변호사/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지시를 내리는 일이다(잘못하여 관련자료를 파기하다가 추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조사의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사내 변호사/법률 고문/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에 관하여 의논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접촉

- 다음으로 할 일은 자율준수관리자/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이다. 보통은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당국이 어느 정도의 혐의 및 정보를 갖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진전도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3) 직원 인터뷰

- 서류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직원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몇 명이나 관여했는지, 아니면 혐의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경우, (i) 조사의 성격, (ii) 당국의 입장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 (iii) 연루된 다른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알려진 사실, (iv) 해당 회사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개인 접촉

- 또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비슷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들과 접촉하는 것이다. 경쟁 회사일 경우, 민감한 사항에

있어 쉽게 신뢰해서는 안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및 회사의 입장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사내외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 조력

-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는 사내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

(6)CEO 또는 고위 임원의 의사결정 참여

- 사내외 변호사 및 전문가가 가장 신속히 내려야 할 결정 중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사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을 대표하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하여야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V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DOOSAN

V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DHS09070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04. 10. 01
개정 2010. 06.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며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두산에너빌리티(주)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법규는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법규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자율준수관리자

제4조(선임과 해임)

1.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 5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7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반기당 2시간 이상의 임직원 교육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상벌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운영 및 상벌 등 인사처분을 위한 상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 운영 및 상벌 등 인사처분을 위한 상벌위원회의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 운영 및 상벌 등 인사처분을 위한 상벌위원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역할)

자율준수 운영 및 상벌 등을 위한 상벌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3.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3절 임직원

제13조(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4조(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제16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에게는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법규령의 개정 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4.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19조(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증권거래소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3조(자문) 공정거래 관련법규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위원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의 관련 규정보다 우선한다.



4대 가이드라인

DOOSAN

VIII 4대 가이드라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제정 2007. 11. 01
개정 2007. 11. 05
개정 2009. 06. 01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회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기준)

회사의 구매방식은 경쟁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경쟁구매는 비교견적, 전자경매(e-Auction), 지명경쟁입찰을 의미한다. (EPC BG 건설 관련 부서는 하도급관리 업무기준을 따른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비교견적은 e-Sourcing을 통해 견적마감시간까지 견적금액이 Open되지 않는 Sealed 방식으로 추진되는 e-RFQ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상 e-RFQ 적용이 어려운 경우 봉인견적, Fax 및 e-Mail(보안파일)로도 견적을 접수할 수 있다.

1. 비교견적(e-RFQ)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할 수 있다

가. 사양, Scope, 도면 등이 미확정인 경우

- 나. Vendor품 등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 다. 해외기업이 포함되는 경우 등
- 2. 전자경매(e-Auction), 지명경쟁입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할 수 있다.
 - 가. 최소 2개 이상의 기업이 제작기술, 수행능력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입찰내정가격(시작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3.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행할 수 있다.
 -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운 경우
 - 나. 해당 구매품의 공급업체가 단일업체인 경우
 - 다.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고시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물품을 매입할 경우
 - 라. 발주자(고객)가 지정한 업체
 - 마.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 있는 사전견적 제시로 회사의 주수에 현저히 기여한 업체
 - 바. 단가계약된 업체와 계약을 연장할 경우
 - 사. 특정업체가 자체 개발한 제품을 계약할 경우
 - 아. 특정회사만 수행할 수 있거나 안전확보, 긴급공사, 영업 비밀보호, 지역발전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제3조(거래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회사는 홈페이지 e-Sourcing시스템에 'Q&A 및 제안마당'을 운영하고, 거래업체가 제안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며, '신규업체등록'란을 통해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업체에 공평한 등록기회를 부여한다.

제4조(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1. 회사는 거래를 위한 관련정보를 e-Sourcing을 통해 공개하고 운영한다.
2.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의 채널을 다양화, 시스템화하여 PRM구축에 노력한다
3. 지속적인 지도, 교육, 각종 지원을 통해 거래업체의 생산 및 품질역량 향상에 힘쓴다.

4. 사내/외 협력사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제5조(중소기업 지원조직 운영)

협력사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언제도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동반성장추진팀'을 운영한다.

제6조(계약체결 준수사항)

회사는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교부

- 제작 착수 혹은 공사 착공 전에 기명날인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서면교부 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경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3. 명확한 납기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다.
- 거래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 부당한 수령지연/거부로 인한 거래업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정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7. 계약 해제, 해지

- 다음의 경우는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해지 가능하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혹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기업으로의 합병을 결의, 재해 등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1개월의 최고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지연으로 납기준수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거래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계약체결 시 금지사항)

1. 서면미교부

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
- 특정 협력사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
- 협력사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대금 결정
- 거래조건에 대한 착오,협력사를 기만한 대금의 결정
- 수의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계약 체결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

- 원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대금을 낮게 결정
 - 대금 미확정 상태에서 업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금액 이하로 대금 결정하는 행위
3.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 거래업체의 임직원 선임,해임에 간섭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목적과 무관한 재하도급거래내용 간섭행위
 - 정상적인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공사개입행위
 - 거래업체의 사업영역을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4.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추가물량 발생시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5. 민원처리 비용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민원발생에 대해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해결 비용에 대해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7. 부당한 반품 행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8.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위탁 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조기지급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거래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를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9.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협찬금, 지원금 요구 행위)
10. 회사의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11.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12. 보복 조치 행위
13. 탈법 행위
14.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15.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제8조(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회사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한 계약이행이 되도록 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7. 11. 01 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7.11.05] 2007.11.05일부터 개정본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9.06.01] 2009.06.01일부터 개정본에 따라 시행한다.

협력사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제정 2007. 11. 01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협력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협력사"라 함은 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하며, 등록업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2. "협력사 풀(Pool)"이라 함은 회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사 선정"이라 함은 회사의 협력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사 운용"이라 함은 회사가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협력사 선정기준)

회사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협력사 선정기준을 운용한다

1. 제조업
 - 1) 최소 등록 기준

- 회사 설립연차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신용인증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용등급 B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업종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70/100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가. 제품제작(생산)업체, 운송업체, 공정처리(가공, 제관 …)업체, 건설업체
 - 종업원수/설립년차(20점), 수행역량(20점), 품질(30점), 재무신용등급(30점)
- 나. 연구소, 학교법인, 판매업체, 서비스/용역제공업체
 - 종업원수/설립년차(50점), 수행역량(30점), 품질(10점), 재무신용등급(10점)

2. 건설업

1) 최소 등록 기준

- 회사 설립년차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신용인증평가기관으로 부터 신용등급 B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해당공사에 필요한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사고 및 환경사고 다량 발생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70/1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

- 재무신용등급(40점), 시공능력(40점), 포상현황(5점), 기술자평가(10점), 신기술(5점)

제4조(협력사 선정절차 및 결과 공개)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1. 제조회

- 거래희망업체는 언제든지 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업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등록 가능하다.
-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자동평가를 수행한다.
-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른 결과를 거래희망업체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된다
- 점수가 미달된 업체는 등록정보 갱신사항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등록정보 수

정을 통해 재차 등록요청을 할 수 있다.

2. 건설업

- 업체추천 및 거래희망업체로부터 등록서류를 접수 받아 등록을 할 수 있다
- 신규등록 및 기존협력사 등록갱신은 년1회, 매년 5월에 일괄 심사하여 결정한다.
-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 매년 사업계획에 의한 하도급물량을 추정하여 공종별 적정 협력사수를 제한하여 등록할 수 있다.
- 신규업체 등록을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수 있다.
- 평가결과를 승인권자에 승인을 득한 후 1년간 등록업체로 관리.운용된다.
-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제5조(공정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사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한다.

제6조(협력사 등록취소 기준)

협력사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부도, 폐업, 면허취소 또는 파산업체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유발 업체
-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거래유지가 부적절한 업체
- 중대품질문제를 야기하여 회사의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유사 동종업체를 선동하여 단합 등 입찰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 법규위반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사례 등 하도급질서의 위반 또는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건설업에 등록된 경우 1년간 시공실적 평가점수가 32/40점 미만인 경우

2. 부당한 등록취소 기준

-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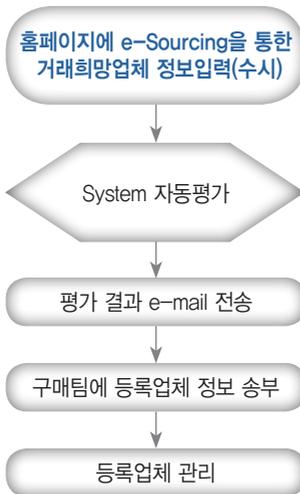
- 경쟁사업자의 협력사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등록 해지된 업체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두산에너지 빌리티의 귀책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 한다.

제7조(가이드라인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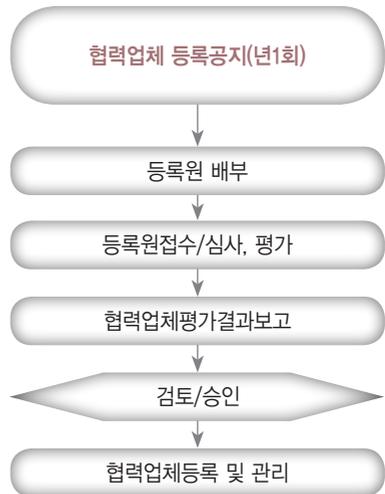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고 이의 기준은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상벌규정 등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첨부. 협력사 등록절차]

● 제조업



● 건설업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07. 11. 01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부 심의위원회의 구성)

1.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는 별도 구성없이 구성요건과 목적에 부합되는 “외주관리 심의위원회”로 운용하고, 월 정기 회의는 그 위원장 및 구성인원이 참석하는 “전략구매회의”를 통해 수행한다. (이하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외주관리 심의위원회”로 호칭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그룹별 특성에 따라 일정금액이상의 개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사전검토의 효율성을 위해 예하에 사업별 “BG심의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
 - 위원장 : 자율준수프로그램 주관부서 담당임원
 - 위 원 : 구매팀장, 품질운영팀장, 환경안전부장, 외주관리부장
 - 간 사 :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 BG심의위원회 : 구매담당임원 또는 기획담당임원, 구매팀장, 외주관리 또는 생산관리팀장 등으로 구성하여 운용한다.

제3조(역무 구분)

회사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협력사 선정기준을 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 협력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여부 사전 심의
- 협력사 미 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을 심의
-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 사전 시정조치 및 고의 및 중대한과실의 임직원 제재

2. BG심의위원회

- 20억 원 이상 개별 하도급 발주 건에 대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사전 심의 ([첨부] “개별 계약건 적법성 Check sheet” 활용)
 -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
 -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
 -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제4조(심의 위원회 개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동반성장추진회의)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심의 위원회 의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서류 보존)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의 보관년한은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보관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012. 07. 01

제1조(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두산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란 한다.)의 하도급 계약체결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발급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제3조(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 1) 회사는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2.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 2)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3)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3. 서면발급 시점

- 1) 원칙적으로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②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③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④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4. 서면발급 방법

-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회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 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회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6.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 ①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첨부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②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첨부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③ 만약 회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

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1)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2. 서면 기재사항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식

- 1)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2)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 3]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을 사용한다.
-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 외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회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차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회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회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회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회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1)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회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을 사용한다. [첨부]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 3)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4)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 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회사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2)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서면의 발급)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1)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
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1)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
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
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3) 다만, 회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
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③ 회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 4)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
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1)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
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1) 위 가. 나. 다. 의 경우, 회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2) 위 가. 나. 다. 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7조(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회사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기본계약서(추가, 변경 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의무발급서면
2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6항	
3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일련번호	보존 대상 서면	비고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 3	의무발급서면
5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6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7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주요 하도급 거래내용 등 기재서류
9	대금의 지급일, 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결제 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 1항 제3호	
10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관세 등의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시행령 제6조1항 4호	
11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2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3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14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 회사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급사업자가 회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별 계약건 적법성 Check She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 NO : ▪ PJT 명(공사명) : ▪ Item 명(공종명) : ▪ Supplier 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일 : ▪ 심의자 : 1.서명 2.서명 3.서명 		
심의항목	심의 Point	심의결과		시정조치
		적합	부적합	
1. 서면계약서	-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이 기록되어있는가? (계약금액, 위탁일, 위탁내용, 납품일/장소, 대금지급방법, 지급일, 검사방법)			
2. 내국신용장	- 해외수주PJT(수출품)인 경우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는가? (수급사업자가 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개설불요확인서를 받았는가?)			
3.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 계약금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경우 하도급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대금지급보증증권 원본을 계약 후 교부 예정인가?			
4.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경쟁입찰 최저가견적업체 낙찰시 입찰금액보다 낮은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는가?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도급의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하였는가?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하도급 대금을 실행예산내로 결정 하였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하였는가?			
	- 차후 수주(물량)건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케 하여 계약금액을 낮게 결정하지 않았는가?			
5. 구매강제금지	- 대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내용, 자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물품, 장비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는가?			
6.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 정당한 사유없이 찬조금, 협찬금, 지원금 등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 본 Check sheet는 구매담당임원(기획담당임원), 구매팀장, 외주관리(생산관리)팀장 등이 계약건을 심의한다.
 ※ 개별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의 계약건에 적용된다.

